

2022.4.



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www.pipc.go.kr) 또는 가명정보 결합종합지원시스템(link.privac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4.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목차

제1장	가이드라인 개요	
	1. 목적	5
	2. 적용 대상	6
	3. 용어 정리	7
제2장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처리	
	1.개요	9
	2. 목적 설정 등 사전 준비	11
	3.처리 대상의 위험성 검토	15
	4. 가명처리	32
	5. 적정성 검토	35
	6. 안전한 관리	37
제 3 장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1. 개요	39
	2. 가명정보 결합·반출 절자	41
	3. 사전준비	44
	4. 결합신청	45
	5. 결합 및 추가 가명처리	48
	6. 반출 및 활용	56
	7. 안전한 관리	58
제 4 장	안전성 확보 조치	
All T O		Ε0.
	1. 관리적 보호조치 2. 기술적 보호조치	59 63
	2. 기물식 보호조시 3. 물리적 보호조치	66
	4.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66
	1. O = 1 /11 = E = 1 = 0	00



부록1 참고자료

1. 개인성보 가명저리 기술 및 예시	6
2. 특이정보 처리 사례	82
3. 결합의 다양한 유형	88
4. 시계열 분석을 위한 반복결합 절차	90
5. 가명처리 및 결합 목적 증빙 자료 예시	92
6. 결합신청서 작성 방법	9!
7. 반출신청서 작성 방법	98
8. 내부 관리계획 작성 예시	100
9. 적정성 검토 관련 서식 예시	103
10 가명정보 처리 관련 실무 서식 예시	113

부록 2 적정성 검토 시나리오 115

부록 3 자주 묻는 질문(FAQ) 133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제1장

가이드라인 개요

1 목적

- 빅데이터, AI 등 다양한 융·복합 산업에서의 **데이터 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데이터 활용의 핵심인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 가명정보 활용에 필요한 가명정보 처리 목적, 처리 절차 및 방법,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여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 ☑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 동력인 '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데이터3법*이 시행('20.8.5.)되어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새롭게 마련됨
 -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신용정보법'이라 함)
- ☑ 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개정 및 시행('20.8.5.)으로 새롭게 도입된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보호법 제3장 제3절)에 관한 설명과 구체적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가명정보의 처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여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작성하였음
 - ※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 경우 가이드라인 미준수를 사유로 처벌받지 않음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데이터의 관련 분야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처리 가능함

2 적용 대상

- ☑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보호법(제3장 제3절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에 근거한 가명정보 처리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라 함)와 소관 부처가 공동으로 발간한 개인정보의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분야별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가이드라인을 우선 적용함
 - *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교육부),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행정안전부) 등
- ☑ 또한 본 가이드라인은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보호법 제3장 제3절)에 근거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가명정보의 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함
 - ※ 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 등에 근거한 가명처리는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가명처리에 관한 기술적 내용 등은 참고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등) 시행령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 보호법 개정 및 시행('20.8.5.)으로,「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16)은 더 이상 현행법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아니므로 활용하지 않음

3 용어정리

구분	용어설명
개인정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가명처리를 거쳐 생성된 정보로서 그 자체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함) ※ 개인정보에 대한 판단기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정보 또는 접근 가능한 권한 등 개인정보 처리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야 함
가명처리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이하 '추가정보'라 함)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익명정보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추가정보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가명처리 과정에서 생성 또는 사용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결합될 수 있는 정보(알고리즘, 매핑테이블 정보, 가명처리에 사용된 개인정보 등) ※ 가명처리 과정에서 생성·사용된 정보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다른 정보와 구분됨
재식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것
가명정보 처리시스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
결합키	결합 대상 가명정보의 일부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나 다른 결합대상정보와 구별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정보로서, 서로 다른 가명정보를 결합할 때 매개체로 이용되는 값
결합키연계정보	결합키가 동일한 정보에 관한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결합신청자의 결합키를 연계한 정보
결합대상정보	결합신청자가 결합을 위해 결합전문기관에 제공하는 가명정보에서 결합키를 제외한 정보

구분	용어설명
결합정보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대상정보를 결합하여 생성된 정보
반출정보	결합전문기관에서 결합된 결합정보 중 결합전문기관의 심사를 통해 반출된 정보
반복결합	시계열 분석 등을 위해 가명정보 결합을 반복하는 결합
반복결합 연결정보	반복결합을 통해 반출된 반출정보의 반복적인 분석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반출시 해당 정보를 포함하여 반출
결합신청자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등 * 가명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자(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
결합전문기관	보호법 제28조의3 제1항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결합키관리기관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3 제2항에 따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을 지원(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제공하는 등) 하는 업무를 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개인정보위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가명정보 관련 제도 현황에 대한 참고

연번	구분	내용	소관부처
1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위
2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
3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위
4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
5	고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위
6	고시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위
7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금융위
8	가이드라인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인정보위
9	가이드라인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10	가이드라인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교육부
11	가이드라인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	행정안전부
12	가이드라인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금융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각 정부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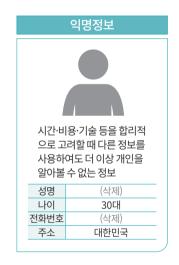
제2장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처리

1 개요







- ☑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이용, 제공, 결합 등 처리 할 수 있음(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제28조의3 제1항)
 - ※ (주의)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가 가능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에 한정되므로 <u>처리 목적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유하고</u> 있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보관하는 것은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에 근거한 처리로 볼 수 없음
 - ※ 불특정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공개 등) 익명정보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 가명처리와 가명정보의 처리 차이점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과정, "가명정보 처리"는 가명처리를 통해 생성된 가명정보를 이용·제공 등 활용하는 행위를 말함

- ☑ 가명정보는 가명처리를 수행한 당시의 목적과 처리 환경(활용 형태, 처리 장소, 처리 방법)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28조의3 제1항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명정보를 당초 처리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재제공하는 등을 금지하고 있지 않음
 - ※ (예외) 제공 계약 시 재제공 제한이 있거나 반출 시 이용 범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재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이 불가할 수 있음
 - ※ (주의) 가명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만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처리 환경이 달라지는 경우 추가 가명처리 과정을 거쳐야 함
- ☑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는 ① 가명처리 목적 설정 등 사전준비, ② 위험성 검토 ③ 가명처리 수행, ④ 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 ⑤ 가명정보의 안전한 관리 단계로 이루어짐

▮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단계별 절차도

1단계	 	2단계	•	3단계	 	4단계	•	5단계
목적 설정 등 사전준비		위험성 검토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안전한 관리

기타 참고사항

- ▶ 개인정보처리자는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음
 - 가명처리 관련 업무의 총괄·관리 및 의사결정을 위한 총괄부서(또는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1) 가명정보 처리 목적의 적합성 검토
 - 2) 가명처리
 - 3)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 4)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관리 · 감독
 - 5)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수행
 - 6) 그 밖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가명정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 1), 3)의 경우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가명처리 관련 업무 담당자의 분리

- 가명정보의 재식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가명처리가 완료된 가명정보 처리를 수행하는 업무담당자를 각각 분리하고, 해당 업무별로 접근권한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안전함
- ※ 추가정보의 내용을 알고 있는 자가 가명처리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거나 가명정보를 처리(활용)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우려가 있음

2 1단계 목적 설정 등 사전 준비

- 가명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가명정보 처리 목적의 적합성 검토 및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방침(62p), 내부 관리계획(100p)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
- ☑ 목적 설정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에서 정한 목적 중에서 가명정보 처리 목적을 선정하고 명확히 설정하여야 함

"통계작성"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

- "통계"란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한 수량적인 정보를 의미함
- "통계작성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란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가명정보를 이용, 분석, 제공하는 등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함
-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이 시장조사를 위한 통계 등 상업적 성격을 가진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함

예시

- 지방자치단체가 연령에 따른 편의시설 확대를 위해 편의시설(문화센터, 도서관, 체육 시설 등)의 이용 통계(위치, 방문자수, 체류시간, 연령, 성별 등)를 작성하고자 하려는 경우
- 인터넷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등에서 주간, 월간 단위로 판매상품의 재고를 관리하기 위해 판매상품에 대한 지역별 통계(품번, 품명, 재고, 판매수량, 금액)를 작성하고자 하려는 경우
- A공사가 도로구조 개선 및 휴게공간 추가설치 등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월별 시간대별 차량 평균속도, 상습 정체구간, 사고구간 및 원인 등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려는 경우

"과학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 처리

- "과학적 연구"란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로서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기초연구, 응용연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산업적 연구도 해당함
 - *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 가능한 질문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말함
- "과학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의 처리"란 과학적 연구를 위해 가명정보를 이용, 분석, 제공하는 등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함
- 또한 과학적 연구와 관련하여 공적 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민간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수행하는 연구에서도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함

예시

- 코로나19 위험 경고를 위해 생활패턴과 코로나19 감염률의 상관성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건강관리용 모바일앱을 통해 수집한 생활습관, 위치정보, 감염증상, 성별, 나이, 감염원 등을 가명처리하고 감염자의 데이터와 비교·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려는 경우
- A지자체에서 특정 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의 유사 관광지 주변의 상권과 유동인구 분석을 통한 관광지 주변 상권에 대한 지원 및 전환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려는 경우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스팸정보와 민간 통신사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스팸정보를 가명정보 결합하여 보다 더 많은 스팸정보를 차단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스팸정보에 해당하는 전화번호,유형,날짜,내용,신고건수 등의 정보를 가명처리 및 결합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 결합에 참여한 스팸방지 시스템을 고도화 하려는 경우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

- "공익적 기록보존"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열람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의미함
-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란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해 가명정보를 이용, 분석, 제공하는 등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함
- 공익적 기록보존은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경우에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 단체 등이 일반적인 공익을 위하여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이 인정됨

예시

- 연구소가 현대사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중 사료가치가 있는 생존 인물에 관한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기록·보존하고자 하려는 경우
- 연구소가 코로나19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중 공익적 연구가치가 있는 환자에 관한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기록보존하고자 하려는 경우
- ☑ 가명처리 대상 선정(결합대상 속성정보 선정): 처리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의 종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가명처리 대상을 선정함
 -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한 경우 가명처리 대상 정보에서 해당 정보주체의 정보를 제외하고 선정해야 함(보호법 제37조)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 ✓ 처리 목적 적합성 검토(개인정보 보유부서 또는 가명정보 활용 관련 전담부서 등):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및 성격, 가명정보 활용 목적, 이용 목적에 대한 법률적 근거 등을 고려하여 가명처리 여부를 결정함
 - ※ 필요시 적합성 검토위원회 심사 또는 외부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결정할 수 있음

- ☑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안전조치 이행: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보호법 제30조), 내부 관리계획수립·시행(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3조) 등 가명정보 처리에 앞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준비해야 함
 -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내부 관리계획이 없는 경우 수립이 필요함 ([제4장 안전성 확보 조치] (59p) 참고)
- ☑ 필요서류 작성: 가명정보의 처리 또는 가명처리를 위탁(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수행)하거나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재식별 금지에 관한 사항, 기타 처리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음
 - * (예시) 가명정보의 재제공 금지, 가명정보 재식별 금지,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명정보의 처리기록 작성 및 보관, 가명정보의 파기, 재식별 시 책임 및 손해배상 등
 - 또한 가명정보 처리 또는 가명처리 위탁 시 위탁 관련 문서 작성, 위탁 업무 공개, 수탁사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등 위탁 처리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여야 함
- ☑ 기타: 개인정보 활용 및 가명처리 등에 대해 내부 승인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단계에서 해당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적절하지 않은 예시) 신제품 개발을 위한 과학적 연구 수행 ※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적절하지 않음
 - (적절한 예시) OO제품의 성능 개선을 위해 개인별 OOO특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개인별 특성과 성능 요인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 수행

기타 참고사항

- ▶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민감정보(보호법 제23조) 또는 고유식별정보(보호법 제24조)도 가명정보 처리 특례에 따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원칙(보호법 제3조)을 준수하여 처리 목적에 필요하지 않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는 삭제하여야 함
 -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 특례에 따른 가명처리는 허용되지 않음(보호법 제24조의2)
 - ※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이 적합한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으므로 개인정보 처리자는 향후 처리 목적에 대한 증빙을 위해 연구계획서 등 목적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음 ([참고자료] 참고5. 가명처리 및 결합 목적 증빙 자료 예시 (92p) 참고)

3 2단계 처리 대상의 위험성 검토

- ☑ 대상 선정 : [1단계. 사전 준비]에서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을 개인정보파일에서 선정함
 - ※ 가명처리 대상 항목 선정 시 가명정보 처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항목으로 해야 함

예시 가명처리 대상 항목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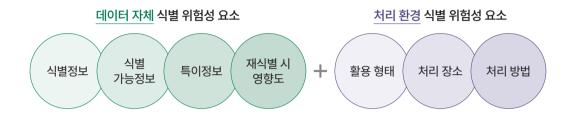
- ▶ 가명처리 목적 : 성별과 지역에 따른 구매액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함
- ▶ 개인정보파일 내 항목: 성명, 휴대폰번호, 성별, 이메일, 주소, 구매상품, 구매액, 장바구니 목록
- ▶ 가명처리 대상 항목(속성정보):성별, 주소(시군구), 구매액
 - * 분석 목적과 상관없는 속성정보는 제외하고 대상 선정
- 가명처리 시에는 가명정보 그 자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와 가명정보를 처리할 자가 보유하거나 접근·입수가능한 정보*와의 사용·결합을 통해 식별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함
- * 다른 정보와의 사용·결합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보호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제2조(정의) 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에시 전화번호,지명,소속,대화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추론할 수 있는 대량의 대화 문장 같은 경우 다른 정보와의 사용·결합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있음
- 가명처리 수준은 가명정보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당초 가명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처리하거나 재제공하는 등 활용 형태, 처리 장소, 처리 방법 등 처리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경우 해당 상황을 고려한 추가적인 가명처리가 필요함

- ☑ 위험성 검토: 위험성 검토는 가명처리 대상 데이터의 식별 위험성을 분석·평가하여 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이며,
 - 식별 위험성은 1) 데이터의 식별 위험성과 2) 처리 환경의 식별 위험성으로 구분하여 검토해야 함



	식별정보	 특정 개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정보 (예시) 성명, 고유식별정보, (개인)휴대전화번호, (개인)전자우편주소, 의료기록번호, 건강보험번호 등
데이터 자체	식별가능정보	 다른 항목과 결합하는 경우 식별가능성이 높아지는 항목 (예시) 성별, 연령, 거주 지역, 국적, 직업, 위치정보 등 해당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
식별 위험성 요소	특이정보	 전체데이터에 식별가능성을 가지는 고유(희소)값, 편중된 분포를 가지는 단일·다중이용항목 (예시) 희귀성씨 등 특이한 값, 국내 최고령 등 극단값, 특정 데이터 분석집단에서 희소한 값 등
	재식별시 영향도	 특정 정보주체에게 사회적 파장 등 영향도가 높은 항목 사회통념상 차별받을 수 있는 정보 또는 재식별로 인한 불이익이 큰 정보주체(대중적으로 유명한 사람 등)
처리환경 식별 위험성 요소	활용 형태	 내부 이용 또는 외부 제공하는 경우 처리자(또는 취급자)가 보유하거나 접근·입수가능한 정보, 이용 범위 및 유형 등 보안서약서, 계약서 등을 통해 파악 가능한 범위 정보를 고려하여 식별 가능성 검토 가능
	처리 장소	 해당 가명정보 외에 다른 정보의 접근·입수가 제한된 장소에서 처리되는지 여부 보안서약서,계약서 등으로 내·외부 활용이 제한된 경우 폐쇄 환경에 준하여 검토가능
	처리 방법	 가명정보를 다른 정보와 연계·분석·내부 결합하는 경우 결합 후 식별가능한 항목 가명정보 반복 제공시 식별 위험이 높아지는 항목

1) 데이터의 식별 위험성 검토

- ☑ 데이터 자체의 위험성 검토는 가명처리 대상이 되는 정보에 식별 가능한 요소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① 그 자체로 식별될 위험이 있는 항목, ② 다른 항목과 결합을 통해 식별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 ③ 특이정보, ④ 그 밖에 데이터 특성만으로 재식별 시 사회적 파장 등 영향도가 높은 항목 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함
 - (식별정보) 다른 사람과 구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 정보는 특정 개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정보로, 해당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
 - (식별가능정보) 단일 항목으로는 식별 가능성이 없으나, 가명처리 대상이 되는 다른 항목과 결합하는 경우 식별 가능성이 높아지는 항목이 있는지 검토

예시 개인 식별 가능성이 높은 정보

- ▶ 식별정보: 성명,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개인)휴대전화번호, (개인)전자우편주소, 의료기록번호, 건강보험번호 등 식별을 목적으로 생성된 정보
- ▶ 식별가능정보: 성별, 연령(나이), 거주 지역, 국적, 직업,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입장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는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정보의 제공 관계에 있어서는 제공받는 자를 포함)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특이정보 유무) 가명처리 대상 전체 데이터에 식별 가능성을 가지는 고유(희소)한 값이 있는지, 편중된 분포를 가지는 단일·다중 이용 항목이 있는지 검토
- ※ 가명처리 대상 정보의 항목별 분포와 특이정보의 포함 여부 등을 말하는 것으로 분포가 편중되어 있거나 특이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식별 가능성이 높음

예시 특이정보

- ▶ 희귀 성씨, 희귀 혈액형, 희귀 눈동자 색깔, 희귀 병명, 희귀 직업 등 정보 자체로 특이한 값을 가지는 정보
- ▶ 국내 최고령, 최장신, 고액체납금액, 고액급여수급자 등 전체적인 패턴에서 벗어나는 극단값을 발생할 수 있는 정보
- ▶ 도서·산간 지역주민의 영유아에 대한 정보 등 특정 데이터 분석 집단에서 희소한 값을 가지는 정보

- (재식별시 영향도) 데이터가 지니는 특성만으로 재식별 시 특정 정보주체에게 사회적 파장 등 영향도가 높은 항목이 있는지 검토
- ※ 사회통념상 차별 정보 등으로 정보주체가 피해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정보 등

2) 처리 환경의 식별 위험성 검토

-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활용 형태(이용·제공), 처리 장소, 처리 방법(결합여부) 등 가명정보 처리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식별 위험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함
 - (활용 형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처리자(또는 취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또는 접근·입수 가능한 정보, 이용 범위 및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식별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검토
 - ※ 처리자(또는 취급자)가 보유, 접근, 입수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식별가능성을 검토할 필요는 없으며, 보안서약서, 계약서 등을 통해 파악이 가능한 범위의 정보를 고려하여 식별 위험성을 검토하는 것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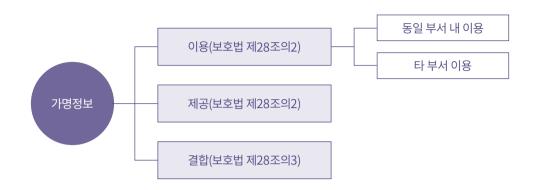
예시 처리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구분	처리자 (취급자)	가명처리전 정보	추가정보	다른 정보 ¹⁾	보 유 경험 및 지식 ²⁾
ΛIR	동일부서	0	0	0	0
이용	타 부서	0	0	0	0
제공	제3자			0	0

주1) 가명처리 전 정보와 추가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말함 주2) 내·외부 이용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과거 유사 정보에 대한 수행 경험이나 지식 등을 말함

- (처리 장소) 가명정보가 해당 가명정보 외에 다른 정보의 접근·입수가 제한된 장소에서 처리되는지 검토
- ※ 다만 보안서약서, 계약서 등으로 내·외부 정보의 활용이 제한된 경우 폐쇄 환경에 준하여 검토 가능함
- (처리 방법)
 - 가명정보를 다른 정보와 연계 분석하는 경우 다른 정보와 결합 후 식별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검토
 - 가명정보를 다른 정보와 내부 결합하는 경우 다른 정보와 결합 후 식별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검토
 - 가명정보를 반복 제공하는 경우 반복 제공을 통해 식별 위험이 높아지는 항목이 있는지 검토

☑ 가명정보 이용 및 제공시 유의 사항



가. 동일 개인정보처리자 내 이용

- □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또는 내부 결합하여 직접 활용 또는 다른 부서에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함
 -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하거나 합법적으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수집 ·제공받은 개인정보
- □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소속 부서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접근 가능한) 정보, 처리 시점을 기준으로 제공받는 다른 정보를 고려하여 식별 위험성을 검토함

잘못된 내부이용(동일 부서 내 이용) 사례1

동일 부서 내 이용으로 ○○화장품 회사의 A팀은 화장품 판매정보를 관리하는 팀으로서, 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신상품 수요조사 예측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활용

- ▶ (처리현황) A팀은 판매정보 내 개인식별 가능성이 있는 이름, 성별, 승인번호를 가명처리하고, 희귀 지역의 판매내역을 삭제하여 A팀 가명정보 분석담당자에게 제공 ✓ 가명정보 분석담당자는 A팀의 판매정보 관리 업무를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 (문제점) 가명정보 분석담당자는 가명정보 분석을 통해 최고가 화장품의 금액과 판매지역을 파악할 수 있으며, 판매정보가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여 금액과 지역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음
- ▶ <mark>해결방안</mark> 가명정보 분석담당자가 가명정보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함

잘못된 내부이용(동일 부서 내 이용) 사례2

동일 부서 내 이용으로 OO유통사의 A팀은 매장의 판매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매장고객(고객번호, 연령, 주소) 정보와 판매정보(제품번호, 제품명, 제품금액, 제품 제고 및 판매량)를 가명처리하여 내부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 (처리현황) A팀은 가명정보 컨설팅 업체를 통해 가명처리에 관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모두 준수하고 개인정보 가명처리 전용 솔루션을 통해 정형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를 수행 ✓ 가명처리된 정보는 판매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활용되었으며, A팀은 보다 나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된 가명정보를 활용하여 신상품 개발을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음
- ▶ (문제점) A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명정보에 대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모두 준수하였으며, 과학적 연구 목적 내에서 판매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였지만 신상품 개발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의 목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 ▶ 해결방안 A팀은 원래 처리 목적 외로 가명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1항의 목적 범위 내에서 가명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새로운 처리 환경에 맞추어 추가 가명처리를 수행하여야 함

잘못된 내부이용(타 부서 이용) 사례1

타 부서 이용으로 □□공사는 A부서의 고속도로 이용차량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관리하는 B부서에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 제공(이 때 B부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고려하지 않음)

- ▶ (처리현황) A부서는 개인식별 가능성이 있는 차량번호, 차종 등을 가명처리하고, 톨게이트 입출시간, 이동량, 사고정보 등의 정보를 B부서에 제공
 - ✓ B부서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관리를 위해 고객번호와 차량번호, 톨게이트 입출시간 및 결제금액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 ▶ (문제점) B부서는 A부서에서 제공받은 정보의 이동시간 정보와 B부서가 보유한 톨게이트 입출시간을 활용하여 특정시간에 통과한 차량의 번호를 알 수 있으며, 해당 차량번호를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음
- ▶ 해결방안 A부서에서는 B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려하여 특정 시간에 대한 식별가능성이 없도록 이동시간 삭제 또는 가명처리 등을 수행하여야 함(필요시 가명처리를 위해 B부서가 보유한 톨게이트 입출시간 정보 제공 요청)

잘못된 내부이용(타 부서 이용) 사례2

타부서 이용으로 ○○사는 A부서의 고객 AS 및 민원처리 내역(비정형 데이터)을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는 B부서에 문의 유형별 민원처리 방안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이때 A부서는 가명처리 후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지 않음)

- ▶ (처리현황) A부서는 보유하고 있는 고객 AS 및 민원처리 내역(질문자, 질문분류, 질문내용, 답변내용, 처리만족도 등 비정형 데이터)을 가명처리하여 B부서에 제공하였음
 - ✓ 민원처리 내역 등의 비정형 데이터는 정규 표현식 및 개인정보 검출 시스템을 통해 가명처리를 수행하였으며, B부서는 제공받은 정보를 그대로 알고리즘 고도화 문의 유형별 민원처리 시스템 개발에 이용
- ▶ (문제점) B부서는 제공받은 비정형 데이터를 알고리즘 고도화 문의 유형별 민원처리 시스템 개발에 활용하려는 시점에 A부서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민원처리 내역)의 가명처리가 미흡하였을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노출되어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음
- ▶ 해결방안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는 현재 기술상 미흡한 부분이 많으므로 적정성 검토 시 신중하여야 하며, 또한 식별 위험이 높으므로 처리 시 폐쇄망 환경에서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식별이 된 경우 해당 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지하고 회수·파기하여야 하며 추가 가명처리 필요 ✓ 현 시점에서 명확한 처리 방안이 없는 비정형 데이터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활용하는 것을 권고 함

나.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제공(제3자 제공)

- □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특정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함
 -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및 신뢰도를 고려하여 제공하는 가명정보로 발생할 수 있는 재식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 보호수준이 낮은 기관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가명처리 수준을 적용하는 방법 등
 -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추가정보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됨(보호법 제28조의2 제2항)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자가 사전에 보유하고 있는(접근 가능한) 정보, 처리 시점을 기준으로 제공받는 다른(개인)정보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함
- *제3자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중 제공받는 가명정보와 연계 또는 조합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 목록 등
- 사전 준비 단계의 계약서에 데이터의 이용환경에 대한 제한 등에 대하여 명시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고려할 수 있음
- * 다른 정보의 접근이 제한된 폐쇄망 환경에서 이용하겠다는 사항 등

잘못된 외부제공 사례1

- 호텔에서는 최고급 객실을 이용한 VIP등의 특이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호텔 투숙 및 서비스 금액 등을 △ 산분석 회사에 제공하고, △ 산분석회사는 해당 정보를 분석하여 시간에 따른 객실이용현황 및 서비스이용에 대한 조사 연구를 수행
- ▶ (처리현황) △△분석회사는 온라인 SNS정보 및 다양한 기업의 정보를 수집하여 다양한 연구조사를 실시하는 회사로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준수하고 있음
 - ✓ 호텔은 회원번호와 이름을 가명처리하고, 나이, 성별, 등급, 예약방법, 객실정보, 체크인, 체크아웃, 서비스 이용금액을 제공

- ▶ (문제점) △△분석회사의 분석담당자는 특정일에 최고급 객실을 이용한 내용을 분석과정에서 인지할 수 있으며, 기존 업무(온라인 SNS정보 수집)를 수행하며 공개된 정보 (예: 개인이 SNS에 올리는 정보, 여행후기 등)를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음
- ▶ 해결방안 ○○호텔은 제공하는 가명정보에 포함된 특이정보(최고급 객실)를 삭제 또는 가명처리 등을 수행하여야 함

잘못된 외부제공(위탁) 사례2

○기관은 복지 서비스 정책 개선에 필요한 모델 개발 연구를 위해 △△대학에 해당 연구를 위탁함. ○기관은 연구를 위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초수급대상자 정보 및 정부예산 수급, 지원 내역을 가명처리하여 제공하였으나, 가명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며 △△대학의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 (처리현황) ○○기관은 가명정보의 처리를 위해 사전에 기관 내 가명정보 분석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한 후 내부 관리계획 및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내부 지침 등을 마련하고 가명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및 권한관리 등 보호 조치를 준수하고 있음
 -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기초수급대상자 정보 및 정부예산 수급, 지원 내역을 가명처리한 후 △△대학에 제공하고 △△대학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아 복지 서비스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
- ▶ (문제점) ○○기관은 △△대학의 요청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대학에 제공하였지만, △△대학에 가명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며 가명처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내부 관리계획 및 추가정보 분리 및 기록보관,
 가명처리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등)를 확인하지 않음
- ▶ 해결방안 ○○기관은 △△대학에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위탁 시 사전에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하며(필요시 교육 또는 컨설팅 제공 지원), △△대학도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및 준수사항을 가명정보 처리 이전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예시 식별 위험성 검토 점검표

구	분	식별 위험성 검토 사항	
		개인 식별이 가능한 항목 여부	
		검토 항목	검토 결과
		① 식별이 가능한 단일항목의 정보가 있는가	
		*[항목설명] 직업에 개인의 식별성이 매우 높은 정보들이 포함되는 경우(장애인 여성 탁구 국가대표 감독, 지방자치단체장, 2급 이상의 공무원 등) 등	□ 예 □ 아니오
		② 두 개 이상의 컬럼(항목)을 조합하여 식별가능성이 높아지는 정보가 있는가	
		* [항목설명] △ 동일 데이터셋 내 여러 이용 항목을 동일 목적으로 함께 분석함에 따라 식별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질병, 투약, 약품 등 연관있는 이용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경우) 등 △ 데이터셋 내 가족관계, 직책관계 등 계층적 특성을 가진 이용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 식별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경우(회사 내 정보 분석 시 해당 데이터셋에 소수 직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 △ 시간, 위치, 행위 등 이용 항목을 함께 분석하는 경우 등	□ 예 □ 아니오
데이터	식별성	③ 공개된 데이터와 결합·대조하여 식별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이용 항목이 있는가	예
	이용 항목이 있는 경우 등 ④ 데이터셋의 크기가 적어 식별이 *[항목설명] 연구대상 질병이 극희	*[항목설명] 통계청의 인구 센서스 데이터를 사용하여 식별가능한 이용 항목이 있는 경우 등	□아니오
		④ 데이터셋의 크기가 적어 식별이 가능할 우려가 있는가	
		*[항목설명] 연구대상 질병이 극희귀질병(국내 유병자가 200명 미만인 질병)이라 이 질병을 가진 대상이 한정된 인원이라 식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등	□ 예 □ 아니오
		⑤ 원본데이터 전체가 아닌 일부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샘플링을 적용하지 않았는가	
		*[항목설명] 상품 구매이력 분석에서 특정 고객층의 전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고객층의 일부를 샘플링해서 분석하는 경우 등	□ 예 □ 아니오
		⑥ 시계열 성격을 가진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가	
		*[항목설명] 대학에서 학생들의 학점 데이터를 입학 때부터 졸업 때까지의 모든 학점에 대해 분석하는 경우 등	□ 예 □ 아니오

구분		식별 위험성 검토 사항	
	특이정보	데이터 분포가 편중되어 있어 식별가능성이 있는 이용 항목 여부	
		검토 항목	검토 결과
		⑦ 연속적인 숫자형 데이터에서 데이터 값의 분포가 양 끝단의 정보(분포 곡선에 따라 한쪽의 정보 포함)가 현저히 낮은 항목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데이터		⑧ 일반적인 문자형 데이터(비 연속적인 숫자형 데이터 및 코드형 데이터 포함)에서 특정 값으로 현저히 낮은 항목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재식별 시 정보주체에게 심각한 피해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이용 항목 여부
		검토 항목	검토 결과
	재식별 시 영향도	⑨ 사회통념상 차별 등으로 인해 정보주체가 피해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정보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⑩ 재식별로 인하여 받는 피해 또는 불이익의 정도와 규모가 상당히 클 수 있는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이용 및 제공	가명정보 활용 형태 및 이용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등을 고려히 식별가능성이 있는 항목 여부	-여
		검토 항목	검토 결과
		① 처리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또는 접근·입수 가능한 정보와 이용 범위 및 유형을 고려하여 식별가능한 항목이 있는가	
처리환경		*[항목설명] △ 시계열 분석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반복 제공할 예정인 경우 반복 제공을 통해 식별 위험이 높아지는 항목이 있는 경우 등 △ 가명정보를 취급하는 자와 관련된 정보가 처리하는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	□ 예 □ 아니오
		⑩ 추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가	□ 예 □ 아니오
		③ 가명정보 제공 시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및 신뢰할수 있는 인증을 받았는가(ISMS, ISMS-P, ISO 27001 등)	□ 예 □ 아니오

구분		식별 위험성 검토 사항				
		가명정보가 관리적·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서 처리되는:	지 여부			
		검토 항목	검토 결과			
	처리장소	⑭ 가명정보 처리 시 다른 정보를 접근·입수할 수 있는 장소인가				
처리환경		*[항목설명] △ 누구나 접근 가능한 개방형 형태의 장소 및 네트워크인지 △ 내부인원만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및 네트워크가 아닌지 △ 가명정보 처리 관련 담당자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및 네트워크가 아닌지 등	□예 □아니오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명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활용 시 식별가능성이 있는 항목	여부			
		검토 항목	검토 결과			
		⑤ 다른 정보와의 연계 분석이 예정되어 있는가	□ 예 □ 아니오			
		16 처리주체가 보유하거나 접근·입수 가능한 정보 등 다른 정보와 연계 또는 결합하여 식별가능한 항목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 식별 위험성 검토 항목별 조치 가이드

7	분	조치 가이드
데이터	식별성	개인을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삭제하여야 하며, 결합 등 이용목적 상 필요한 경우 안전한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정보를 생성하여 대체
	특이정보	특이정보는 그 정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더라도 고유(희소)한 특성 때문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용목적 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면 삭제하고 필요 시 상하단 코딩, 범주화 등 처리
	재식별 시 영향도	사회통념상 차별받을 수 있는 정보나 대중적으로 유명한 사람 등의 정보는 재식별 시 다른 일반정보와 다르게 개인의 피해와 더불어 사회적 파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면 삭제
	이용 및 제공	이용 및 제공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이용자와 제공자가 서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처리 환경에 대한 안전성 입증 관련 협의가 필요
	처리장소	물리적·관리적·기술적으로 처리 장소의 안전성 확보가 되지 않으면 가명처리의 수준을 높이거나 별도의 안전한 처리 장소를 물색
처리환경	다른 정보와의 결합	다른 정보와 연계·결합 예정에 있는 경우 연계·결합되는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가능성이 높아지는 항목이 있는지 추가 검토 필요 처리주체가 보유하거나 접근·입수 가능한 정보를 통해 식별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검토 -내·외부 이용기관 또는 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과거 유사 정보에 대한 수행 경험이나 지식 등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가명정보를 처리하게 되는 관련 담당자에게 사전에 확인 후 체크 필요. 관련 담당자에게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명처리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 등으로 위험성을 낮춰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데이터의 식별 위험성과 처리 환경의 식별 위험성 검토를 통해 가명처리에 대한 식별 위험성 평가 결과를 도출하여야 함

※ 최종 검토의견은 외부전문가에게 자문 및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

▮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 예시(내부이용)

가명정보 활용목적	코로나 이후의 상 코로나의 지속가 변경 등의 판매전 12월까지의 주요	■ 본 기업은 전국적인 소매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상품군별 판매 추이에 대한 통계학적 연구 분석을 통해 이후 코로나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상품의 구매전략, 제품의 진열 위치 변경 등의 판매전략의 수립을 위해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주요 상품군별 판매액 정보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주요 상품군별 판매액 정보를 나이와 성별, 시군구 단위의 주소별로 비교하여 분석							
가명처리 대상 데이터 항목	식품류, 의류, 취미 합계액, 월별 구마 (전체 222개의 컬	■ 고객ID,나이,주소,성별,2019년 1월~12월,2021년 1월~12월까지의 여행용품, 식품류,의류,취미용품,생활용품,유아용품,기타의 7개 범주의 구매금액의 월별 합계액,월별 구매 총 금액,월별 선호 제품군,각 년도의 고객 등급 (전체 222개의 컬럼) ■ 전체 고객 800만명 중 25%를 무작위 샘플링하여 구성한 200만명에 대한 데이터							
	식별성 유무	■ '고객ID'는 개인식별정보임 ■ '나이', '주소', '성별'은 조합했을 때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개인식별 가능정보임							
데이터 위험성	특이정보 유무	■ 각 범주별 구매금액의 경우 특이정보로 인한 개인 식별성이 발생할 수 있음							
	재식별시 영향도	■ 단순 고객의 구매데이터로 재식별 시 영향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이용 및 제공 형태	■ 내부 이용							
처리 환경 검토	처리 장소	 ▶ 가명정보는 인터넷과 원본 DB에 접근할 수 없는 차단된 별도의 분석 PC에서 분석 예정 ■ 분석PC가 있는 환경은 별도의 분석실로 엄격한 출입통제가 되어 있으며 출입 시 출입 관리대장을 기재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	■ 가명처리 전 개인정보와 구매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최종 검토의견

- 해당 연구는 자사의 데이터를 자사의 내부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데이터 자체 위험성과 처리 환경 위험성을 검토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함
 - 결합 가능한 다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처리 장소를 고려했을 때 결합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됨
 - '고객ID'는 개인식별정보로 개인식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따라 연관관계가 없는 일련번호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 '나이', '주소', '성별'은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조합에 의한 개인식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리가 필요
 - '나이': 주 분석대상이 아닌 13세 미만의 경우 삭제처리가 필요하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하나로 묶어 처리하고 그 외의 나이에 대해서는 1살 단위로 제공하며 90세 이상의 나이에 대해서는 90세 이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
 - '주소': 동단위와 상세 주소의 경우 통계목적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며 시군구 단위의 주소까지만 사용하는 것이 필요
 - '성별': 성별은 분석목적에 필요하므로 그대로 사용
- 구매액 관련 정보들은 구매금액별 특이정보를 검토하여 구매 금액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상단 코딩을 적용(19년 8월 취미용품 114,562,000원 → 1억원 이상)해야 함
- 고객등급의 경우 식별성이 높은 VIP와 S를 하나로 묶어 식별성을 낮출 필요가 있음

┃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 예시(외부 제공)

가명정보 활용목적	■ B통계업체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상품군별 판매 추이에 대한 통계작성을 위해 당사의 구매정보 데이터 중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주요 상품군별 판매액 정보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주요 상품군별 판매액 정보를 나이와 성별, 시군구 단위의 주소별 데이터를 분석							
가명처리 대상 데이터 항목	■ 고객ID, 나이, 주소, 성별, 2019년 1월~12월, 2021년 1월~12월까지의 여행용품, 식품류, 의류, 취미용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기타의 7개 범주의 구매금액의 월별 합계액, 월별 구매 총 금액, 월별 선호 제품군, 각 년도의 고객 등급 (전체 222개의 컬럼) ■ 전체 고객 800만명 중 25%를 무작위 샘플링하여 구성한 200만명에 대한 데이터							
식별성 유무		■ '고객 ID'는 개인식별정보임 ■ '나이', '주소', '성별'은 조합했을 때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개인식별 가능정보임						
데이터 위험성	특이정보 유무	■ 각 범주별 구매금액의 경우 특이정보로 인한 개인 식별성이 발생할 수 있음						
	재식별시 영향도	■ 단순 고객의 구매데이터로 재식별 시 영향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처리 환경	이용 및 제공 형태	■ 제3자 제공 - 데이터 제공 계약을 체결하여 데이터를 제공 - 데이터 제공 계약에는 재제공 금지, 목적 달성 후 삭제, 재식별 금지 및 재식별 시 조치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음 ■ B통계업체는 개인정보(가명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ISMS-P 인증을 취득하고 있음						
검토	처리 장소	■ B통계업체에서 가명정보는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는 차단된 별도의 분석 PC에서 분석 예정 ■ 분석PC가 있는 환경은 별도의 분석실로 내부적인 출입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	■ B통계업체는 다양한 통계를 생성하는 업체로 유사 업종에 대한 통계정보 등 결합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최종 검토의견

- 해당 연구는 자사의 데이터를 B통계업체에 제공하는 것으로 데이터 자체 위험성과 처리 환경 위험성을 검토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함
 - 통계전문업체의 특성 상 다른 정보의 결합가능성이 있으나 처리 장소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검토할 때 결합에 대한 시도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고객ID'는 개인식별정보로 개인식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따라 다시 원래의 정보로 대체할 수 없는 Salt값이 포함된 해시처리 등의 기법의 적용이 필요
 - '나이', '주소', '성별'은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조합에 의한 개인식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리가 필요
 - '나이': 물품의 주 구매대상이 아닌 20세 미만의 경우 삭제처리가 필요하며 그 외의 나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구매 분석 통계에 사용되는 10살 단위로 제공하며 80세 이상의 나이에 대해서는 80세 이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
 - '주소': 동단위와 상세 주소의 경우 통계목적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며 시군구 단위의 주소까지만 사용하는 것이 필요
 - '성별': 성별은 분석목적에 필요하므로 그대로 사용
- 구매액 관련 정보들은 구매금액별 특이정보를 검토하여 구매 금액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상단 코딩을 적용(19년 8월 취미용품 114,562,000원 → 1억원 이상)하고 금액에 대해서 라운딩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
- 고객등급의 경우 식별성이 높은 VIP, S, A를 하나로 B, C를 하나로 D, E, F를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음

4 3단계 가명처리

- ☑ 개인정보처리자는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가명정보의 활용 목적 달성에 필요한 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 항목별 가명처리 계획을 설정함
 - 식별 위험성 요소에 대한 주요 항목에 대하여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을 선택 ※ 가명처리 기법 등은 [참고자료] 참고1. 개인정보 가명처리 기술 및 예시 (67p) 참고
 - 목적달성 가능성 검토를 위하여 가명처리 전 이용기관과 협의 가능하며, 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 정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시 식별 위험성을 검토함

▋ 항목별 가명처리계획 작성 예시(내부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비교

순번) 항목명	개인정보유형	_{ᆸᄋᇶ} │ 내부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군인	이 영국당	1 개인성보류성	처리 방법	처리 수준	처리 방법	처리 수준			
1	고객ID	개인식별정보	대체	- 일련번호 대체	대체	- 일련번호 대체			
			범주화	- 14~19세 사이는 14~19세로 범주화	범주화	- 10살 단위 범주화			
2	나이	개인식별가능정보	상하단 코딩	- 13세 미만 삭제 - 90세 이상은 90세 이상 경계치 입력	상하단 코딩	-20세 미만 삭제 -80세 이상은 80세 이상 경계치 입력			
3	주소	개인식별가능정보	부분삭제	- 동단위 이하 삭제	부분삭제	- 동단위 이하 삭제			
4	성별	개인식별가능정보	처리 없음		처리 없음				
5	2019년 1월 여행용품구매액	개인식별가능정보				- 상단 99.9%를 초과하는 경우 경계치로 변경			
6	2019년 1월 식품류 구매액	개인식별가능정보		- 상단 99.9%를 초과하는	범주화	- 금액은 다음과 같이 범주화 적용			
7	2019년 1월 의류 구매액	개인식별가능정보	범주화	경우 경계치로 변경 - 모든 금액에 대해 1만단위 라운딩 처리		- 0원 : 0원 - 10만단위 미만 : 1만단위로 라운드 업			
8	2019년 1월 취미용품구매액	개인식별가능정보				- 1,000만 단위 미만: 10만 단위로 라운딩			
9	2019년 1월 생활용품구매액	개인식별가능정보				- 1,000만 단위 이상 100만 단위로 라운딩			
10	2019년 1월 구매 총금액	개인식별가능정보	범주화	- 각 구매액과 동일한 처리	범주화	- 각 구매액과 동일한 처리			
~	~	~	~	~	~				
217	2021년 12월 식품류 구매액	개인식별가능정보				- 상단 99.9%를 초과하는 경우 경계치로 변경			
218	2021년 12월 의류 구매액	개인식별가능정보		- 상단 99.9%를 초과하는		- 금액은 다음과 같이 범주화 적용 - 0원: 0원			
219	2021년 12월 취미용품구매액	개인식별가능정보	범주화	경우 경계치로 변경 - 모든 금액에 대해 1만단위 라운딩 처리	범주화	-10만단위 미만: 1만단위로 라운드 업			
220	2021년 12월 생활용품구매액	개인식별가능정보		100119128719		- 1,000만 단위 미만 : 10 만 단위로 라운딩 - 1,000만 단위 이상 100만 단위로 라운딩			
221	2021년 12월 구매 총금액	개인식별가능정보	범주화	- 각 구매액과 동일한 처리	범주화	- 각 구매액과 동일한 처리			
222	2021년 고객 등급	개인식별가능정보	범주화	- 식별가능성이 높은 VIP와 S를 하나로 묶어 VIP로 처리	범주화	- 다음과 같이 범주화 처리 - VIP, S, A → 1 등급 - B, C → 2 등급 - D, E, F → 3 등급			

☑ 개인정보처리자는 '항목별 가명처리계획'을 기반으로 가명처리를 수행함

▋ 항목별 가명처리계획에 따른 가명처리 절차(예시)

(원본정보)

소유자 명	연락처	주택 구분	법정	동코드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건물명	전세 (천원)	보증금 (천원)	월세 (천원)	전용 면적	공급 면적
김철수	090-1234-5678	아파트	26350)1070	0 서울 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388-4	한글 아파트	-	25,000	750	104.00	84.00
이영희	090-2468-3579	오피 스텔	36110	1100	0 대전 광역시	서구	둔산동	656	나주 시티오	81,250	-	-	56.45	24.32
박민호	090-9876-5432	아파트	43114	1010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11-13	세종 아파트	125,000	-	-	100.00	84.00
	선정					선 ²	정	L				선정		

(대상선정)

-목적: 부동산 임대소득 계산 및 인근지역 시세자료 파악을 위한 연구

소유자 명	연락처	주택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전세 (천원)	보증금 (천원)	월세 (천원)	전용 면적	공급 면적
김철수	090-1234-5678	아파트	서울 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388-4	-	25,000	750	104.00	84.00
이영희	090-2468-3579	오피 스텔	대전 광역시	서구	둔산동	656	81,250	-	-	56.45	24.32
박민호	090-9876-5432	아파트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11-13	125,000	-	-	100.00	84.00

(위험성 검토)

- 데이터의 식별 위험성과 처리 환경의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 정의
- 소유자명, 연락처는 개인정보로 분류하고 가명처리(암호화)
- 구체적인 지번은 분석목적에 관계 없어 삭제조치 및 시세정보는 분석에 필요한 단위(만원)로 가명처리



- A사의 부동산 시세정보를 B기관에 제공(계약)
- 제공되는 항목의 '지번'의 경우 등기부열람을 통해 특정개인식별 가능성 존재

	식별정보						- 식별가				
소유자 명	연락처	주택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전세 (천원)	보증금 (천원)	월세 (천원)	전용 면적	공급 면적
김철수	090-1234-5678	아파트	서울 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388-4	-	25,000	750	104.00	84.00
이영희	090-2468-3579	오피스텔	대전 광역시	서구	둔산동	656	81,250	-	-	56.45	24.32
박민호	090-9876-5432	아파트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11-13	125,000	-	-	100.00	84.00
(소유자 명	병, 연락처)+Salt깂 암호화					- 삭제 -		- 라운딩 -			

(가명처리)

ID	주택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전세 (천원)	보증금 (천원)	월세 (천원)	전용 면적	공급 면적
wd4e85D2C1qe89rwqe	아파트	서울 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	25,000	800	104.00	84.00
r5w1e2SXzi4wd64qwz	오피스텔	대전 광역시	서구	둔산동	81,300	-	-	56.45	24.32
ghe6W15Z5ax4Qe24jx	아파트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25,000	-	-	100.00	84.00

- ☑ 가명처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추가정보는 원칙적으로 파기하고 필요한 경우 가명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하여야함
 - -추가정보의 분리보관은 [제4장 안전성 확보 조치] 기술적 보호조치 (63p) 참고

5 4단계 적정성 검토

- ☑ 1,2,3단계의 가명처리에 대해 결과 적정성을 최종 검토함
 - 가명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고, 가명처리 한 결과가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지 등 검토
 -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는 내부 인원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검토하거나, 외부전문가를 통하여 검토할 수 있음
 - ※ 최소 3명 이상으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권고하며, 외부전문가 섭외 시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지원마당 ▶ 데이터 안전활용 메뉴에서 분야별 가명정보 전문가 풀을 참고할 수 있음
 - 재식별 가능성이 있는 경우 1, 2, 3단계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절차를 다시 수행하거나 부분적으로 추가 가명처리를 수행함
 - ※ 데이터의 분포, 내용 등을 검토하여 특이정보가 추가로 생성 또는 발견된 경우 재식별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 적정성 검토는 ① 필요서류, ② 처리 목적 적합성, ③ 식별 위험성, ④ 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의 적정성, ⑤ 가명처리의 적정성, ⑥ 처리 목적 달성 가능성 단계로 검토가 이루어 짐
- ☑ 적정성 검토 시 위원장을 선정하여 절차에 따라 검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적인 내용과 각 검토위원의 의견을 고려한 최종검토결과 및 종합검토의견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함

적정성 검토 단계별 절차

단계	검토내용	부적정 시 조치사항	
① 필요서류	사전준비 단계에서 필요서류가 법·제도 목적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	해당 자료 보완 작성 등 재점검	
	가명정보 이용 제공 신청서*, 가명정보 안전: *처리 위탁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계약서, 이용환:		
	▼		
②목적 적합성 등	보호법에서 정한 가명정보 처리 목적에 해당하는지, 처리목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는지 검토	목적 명확화 및 재설정	
	가명처리 및 결합 목적 증빙자료(가이드라인	L 참고5)	
	▼		
③ 식별 위험성에 대한 결과 적정성	가명처리 단계에서 데이터의 자체 식별 위험성,처리 환경의 식별 위험성 등 판단 항목을 누락 없이 검토하였는지 식별 위험성 검토 점검표 및 결과보고서 기반으로 검토	식별위험성 재검토, 결과보고서 보완 등	
	개인정보 유형 분류표,활용데이터 요구 수준표,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보고서, 가명정보 안전조치 의무이행 확약서		
	▼		
④ 항목별 가명처리 계획의 적정성	가명처리 단계에서 위험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항목별 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을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 확인	항목별 가명처리계획 보완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보고서, 항목별 가명처리계획		
	▼		
⑤ 가명처리 결과에 대한 적정성	계획한 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에 따라 실제 가명처리를 수행하였는지 확인 ※특히 대용량 정보의 경우 중간에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가명정보 항목 전체를 확인 필요	가명처리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가명처리를 다시 수행하거나 부분적으로 추가 가명처리를 수행	
	가명정보 처리 기초자료 명세서 ※ 원본데이터 특징,유형,분포 등 가명정보의 생성 및 활용 등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초자!		
	▼		
⑥ 처리 결과에 대한 목적 달성 가능성	가명처리된 정보가 당초 가명정보 처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항목별 가명처리계획 보완, 추가 가명처리 등	
국국 같이 시하십	가명처리 및 결합 목적 증빙자료(가이드라(인 참고5)	

6 5단계 안전한 관리

☑ 적정성 검토 이후 생성된 가명정보는 법에 따라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등 사후관리를 이행하여야 함(보호법 제28조의4)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구체적 내용은 [제4장 안전성 확보 조치] (59p) 참고

1. 재식별 금지 및 재식별 가능성 모니터링

□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되며(보호법 제28조의5 제1항),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우연히 특정 개인이 식별되는 경우 처리중지, 회수, 파기 등과 같이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즉시 수행하여야 함(보호법 제28조의5 제2항)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①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식별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함
- ※ 가명처리 기술의 취약점으로 인한 재식별 가능성 및 다른 정보와 결합 시 재식별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공개데이터의 발생 여부

2. 안전조치 시행

□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전준비 단계에서 수립한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3. 가명정보 처리 관련 기록 작성 및 보관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항목, 이용내역,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

▮ 기타 참고사항 : 내부 결합

- ▶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결합 절차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결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
 - ※ 안전한 결합을 위해 결합키를 이용한 결합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 개인정보처리자는 결합된 정보를 활용할 때 특별한 사유(시계열 분석 등)가 없는 한 결합키 등 결합을 위해 사용한 정보는 삭제하여야 함
 - ※ (주의) 결합키 생성에 이용된 알고리즘, 매핑테이블 등은 추가정보에 해당하므로, 결합된 가명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접근권한을 분리하여야 함



※ 결합키 생성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3장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39p)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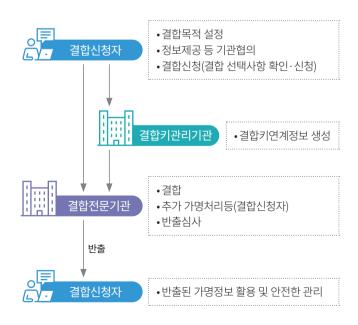
제3장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1 개요

1. 가명정보의 결합

- □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활용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 결합이 가능함
 -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결합전문기관이 수행함(보호법 제28조의3제1항)
- □ 가명정보 결합은 ① 결합신청자의 결합신청, ② 결합키관리기관의 결합키연계정보 생성,
 - ③ 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④ 결합신청자의 반출정보 활용 및 관리 등으로 진행함



가명정보 결합과정에서의 결합신청자, 결합전문기관, 결합키관리기관 역할 · 업무

- ▷ 결합신청자: 가명정보를 제공하거나 결합된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등
 - 결합 목적의 설정, 정보보유기관 등 결합신청자 간 사전 협의, 결합전문기관 선정 및 결합신청 등 수행
 - 결합신청 시 선택사항(모의결합, 결합률 확인, 가명정보 추출) 확인 및 필요한 사항 선택·신청
 - 결합전문기관의 결합 완료 후 추가 가명처리 수행 및 반출신청, 반출된 가명정보의 활용 및 안전한 관리 등 수행
 - *구체적인 사항은 결합신청자의 유형(가명정보 제공 또는 결합정보 이용)에 따라 다름
- ▷ 결합전문기관: 가명정보의 결합, 반출심사 등 수행
 - 결합신청자가 신청 시 선택한 모의결합, 기술지원, 결합신청자의 요청업무 등 추가 수행
 - 결합 전 가명처리, 결합, 추가 가명처리 및 분석, 반출된 정보의 분석 등 지원
- ▷ 결합키관리기관: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지원을 위해 결합키 생성 협의 및 결합키연계정보 생성 등 수행
 - 결합신청자가 신청 시 선택한 결합률 확인, 가명정보 추출 및 반복결합연결정보 생성·관리 등을 추가 수행

2. 가명정보의 결합 유형

- □ 가명정보 결합은 결합신청자 간의 공통되는 결합키에 의해 이루어지며, 결합신청자가 결합 후 활용할 수 있는 정보(반출정보 등)는
 - 공통된 결합키로만 결합(공통결합)된 정보,
 - 각 결합신청자 기준, 공통된 결합키로 결합된 정보와 그 외 결합키의 정보로 구성(확대결합, 잔여결합)된 정보임
 - ※ 결합신청자(A)는 결합결과로서 자신의 결합되지 않은 정보(A) 이용 가능

	공통결합 (INNER JOIN)		확대결합 (OUTER JOIN)	잔여결합 (ANTI-INNER JOIN)
단일	다중	완전	단일	단일
(INNER SINGLE)	(INNER MULTI)	(INNER FULL)	(OUTER SINGLE)	(ANTI-INNER SINGLE)
결합신청자(A) 결합신청자(B)	결합신청자(A) 결합신청자(B) 결합신청자(C)	결합신청자(A)	결합신청자(B) 결합신청자(B)	결합신청자(A) 결합신청자(B)
결합신청자(A)	결합신청자(A)	결합신청자(B) 결합신청자(C)	결합신청자(A)	결합신청자(A)
결합신청자(B) 결합신청자(C)	결합신청자(B) 결합신청자(C)		결합신청자(B) 결합신청자(C)	결합신청자(B) 결합신청자(C)

※ 결합 유형의 세부사항은 [참고자료] 참고3. 결합의 다양한 유형 (88p) 참고

3. 가명정보의 반복결합

- □ 시계열 분석 등을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결합할 때에는 동일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반복하며 결합 할 수 있음
 - 반복결합이 필요한 경우 결합신청 시 반복결합을 선택하여 신청함
 - ※ 반복결합의 경우 반출정보에 반복적인 분석을 위해 필요한 정보(반복결합연결정보)가 추가 포함됨
 - ※ 시계열 분석을 위한 반복결합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 참고4. 시계열 분석을 위한 반복결합 절차 (90p) 참고

2 가명정보 결합·반출 절자

- ☑ 가명정보 결합·반출은 ① 결합신청, ② 결합 및 추가처리, ③ 반출 및 활용, ④ 안전한 관리의 총 4단계를 거쳐 진행함
 - 결합신청자는 결합신청 시 모의결합, 결합률 확인, 가명정보 추출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1단계 결합신청

- ☑ 결합신청자는 신청자 간 결합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 결합신청서 작성 등 가명정보 결합에 필요한 사전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결합전문기관에 결합을 신청함
 - * 개인정보파일에서 가명정보 결합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항목을 선정, 반복결합 여부, 모의결합/결합률 확인/가명정보 추출 신청여부, 결합키 생성항목 등
 - 결합신청자는 결합전문기관과 결합일정, 전송방법 등을 협의함

2단계 결합 및 추가처리

☑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결합신청자는 결합키관리기관으로부터 결합키 생성에 이용되는 정보(Salt값)를 수신하여 결합키를 생성하고 결합신청 시 선택한 모의결합, 결합률 확인, 가명정보 추출 등이 완료되면 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각 기관에 전송함



- 결합정보를 이용하는 결합신청자는 결합전문기관 공간에서 추가 가명·익명처리를 하거나, 결합전문기관이 지원하는 분석기능을 신청·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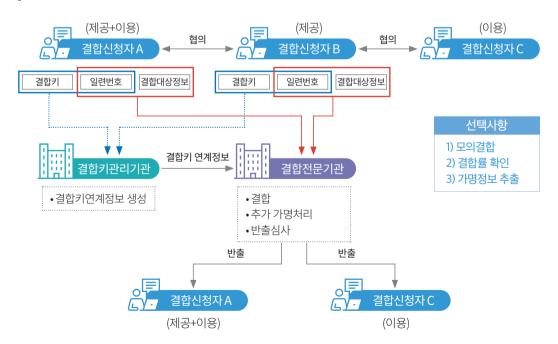
3단계 반출 및 활용

☑ 결합정보 또는 분석결과 등을 반출하려는 경우 결합전문기관에 반출을 신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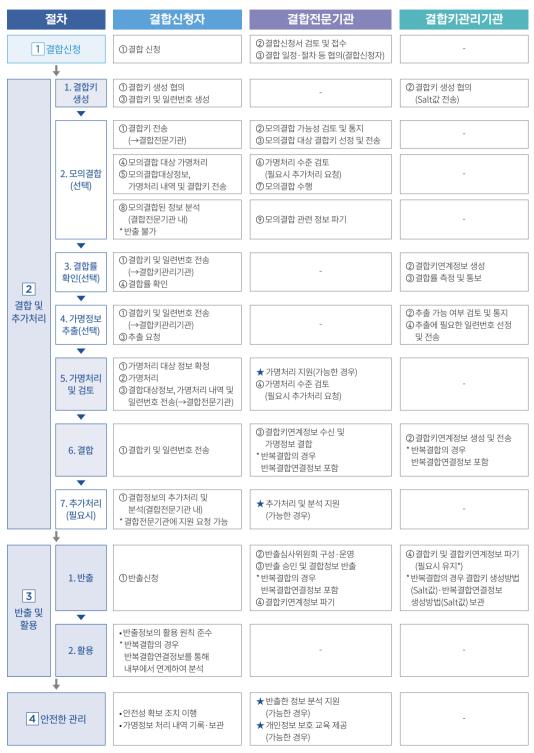
4단계 안전한 관리

☑ 결합정보를 이용하는 결합신청자는 반출한 결합정보(이하 반출정보)를 당초 결합신청서 및 반출신청서에 기재한 목적에 따라 처리하고 안전조치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함

▶ 가명정보 결합·반출 업무 흐름도



▎ 가명정보 결합·반출 세부 절차



^{★:}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의 업무지원 사항으로, 결합신청자는 결합전문기관이 해당 업무에 대해 지원 가능한 경우 요청할 수 있음

3 사전준비

1. 목적 설정 및 결합 가능정보의 탐색

□ 결합 목적 설정

-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결합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함
- * 목적 설정에 관한 설명은 [제2장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처리] (9p) 참고
- 통계작성을 위한 결합이란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대하여 수량적인 정보를 처리하여 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것을 말하며 상업적 성격의 통계 작성도 가능함
- 과학적 연구를 위한 결합이란 과학적 방법을 적용한 연구로서 자연과학, 사회과학, 기초연구, 응용연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 과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것을 말함
-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한 결합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열람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공기관뿐 아니라 기업, 단체 등이 일반적인 공익을 위하여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도 포함한 공익적 기록보존을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것을 말함

□ 결합 가능정보의 탐색

- 결합을 추진하려는 결합신청자는 결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결합 가능정보를 탐색·확인하고 해당 정보의 보유기관과 협의*함
- * 결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항목의 보유 여부, 가명정보의 제공 가능 여부 등

참고사항

- ▶ 개인정보위가 지원하는 '가명정보 결합 매칭지원 서비스'를 통해 가명정보 결합 시 필요한 역량(데이터, 아이디어 등)과 함께 결합을 할 수 있는 기관(기업)을 찾을 수 있음
 - ※ 가명정보 결합종합지원시스템(link.privacy.go.kr) > 결합 매칭지원
 - 결합 아이디어(연구)는 존재하나 데이터 보유기관을 찾고자 하는 경우
 -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명정보의 결합을 추진 시 아이디어 및 결합대상 탐색하는 경우
- ※ 정보보유기관은 결합을 위한 가명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정보가 필요한 개인정보처리자 등은 정보보유기관과 혐의를 진행하여야 함

2. 기관협의

- □ 결합신청자는 결합 목적을 설정하고 다른 결합신청자와 가명정보 결합에 대해 협의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준비 함
 - ※ 협의사항:개인정보파일에서 가명정보 결합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항목 선정, 반복결합 여부, 모의결합/결합률 확인/가명정보 추출 신청여부. 결합키 생성항목 등
 - 결합신청자 간 개인정보의 공통항목 중에서 결합키 생성에 활용할 항목을 결정함
 - ▶ 결합키 생성 항목 정의(예시)
 - 결합신청자(A):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차량 정보, 배기량, 주유금액 등
 - 결합신청자(B):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주거형태, 보증금 유무, 월세 유무 등
 - □ 결합신청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을 결합키 생성 항목으로 선정
- □ 결합신청자는 가명정보 결합에 관한 별도의 내부승인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결합에 대한 계약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4 결합신청

1. 결합 신청

- □ 결합을 위해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결합정보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결합신청자) 모두 결합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함
 - * 현재 가명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결합된 가명정보를 처리할 예정인 자 포함
 - ※ 결합전문기관은 결합 및 반출 등에 필요한 비용을 결합신청자(결합정보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 □ 결합신청자는 가명정보 결합종합지원시스템(link.privacy.go.kr)(이하 '결합종합지원시스템(link.privacy.go.kr)'이라 함)을 이용하여 결합전문기관*에 결합을 신청함
 - * 결합전문기관 현황은 결합종합지원시스템(link.privacy.go.kr)에서 확인 가능함

- ▶ 결합신청자는 결합대상정보에 대한 전문성, 분석 및 가명처리에 필요한 시스템 성능, 소요일정, 가명처리 또는 분석 지원 여부, 모의결합 지원 등 결합전문기관의 지원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합전문기관을 선택 할 수 있음
- ▶ 결합전문기관(보호법)과 데이터전문기관(신용정보법)
 -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사등의 정보와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하도록 규정(신용정보법 제17조의2제1항)하므로, 신용정보회사등과 결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에 결합을 신청하여야 함
 - ※ 결합대상정보의 성격이 아닌 해당 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따라 결합전문기관(보호법) 또는 데이터전문기관(신용정보법)을 구분하여 결합신청 필요
 -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닌 기관이 보유한 금융·신용정보는 보호법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결합을 수행하여야 함
- □ 결합신청자는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결합 고시'라 함)'의 제8조에 따른 [별지 제3호] 결합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결합 신청 시 제출함
 - * 단, 결합신청자가 결합의 선택사항 진행 등의 사유로 결합대상정보에 대한 검토 및 확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결합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결합대상정보의 가명처리 내역에 관한 서류는 가명정보 전송 시제출할 수 있음
 - ※ 결합종합지원시스템(link.privacy.go.kr)을 통해 제출할 결합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참고자료] 참고6. 결합신청서 작성 방법 (95p) 참고
- □ 결합신청자는 결합전문기관이 신청서 작성내용(결합 목적 적합성 등) 및 첨부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청한 경우 결합신청자는 해당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함
 - 결합전문기관은 서류 누락 등 신청서류에 더 이상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 결합신청서를 접수하고 결합신청자에게 신청접수 사실을 통지함
 - 결합신청을 접수한 이후에도 결합전문기관은 결합 목적, 결합대상 항목 등이 적절한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합 목적 증빙 자료 제출이나 결합대상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 결합신청자는 결합 신청 내역에 따라 결합 절차 및 필요한 정보 등을 결합전문기관 및 결합키관리기관과 협의할 수 있음

2. 모의결합, 결합률 확인, 가명정보 추출 등의 선택 신청

- □ 모의결합: 결합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의 일부를 결합·분석하여 결합의 유용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함
- □ 결합률 확인 : 결합대상정보의 가명처리에 앞서 결합률을 확인하는 절차로써 결합키와 일련번호로 결합률을 확인함
 - * 결합률 확인 후 결합 절차의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결합 절차 진행 결정 이후 가명처리를 수행할 수 있음
- □ 가명정보 추출 : 결합대상정보 중 결합되는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추출*하는 절차를 말함. 결합대상정보 전부를 가명처리하거나 전송하는 방식에 비하여 효율적이며 안전할 수 있음
 - *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도록 결합되지 않는 정보를 일부 포함하여 추출(결합키관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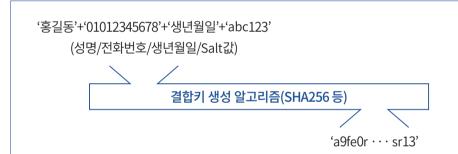
신청항목	처리기관	비고
모의결합	결합전문기관	결합신청자(결합키) → 처리기관(모의결합 대상 결합키) → 결합신청자(모의결합대상정보) → 처리기관(모의결합) →결합신청자(분석)
결합률 확인	결합키관리기관	결합신청자(결합키, 일련번호) → 처리기관(결합률) → 결합신청자(결합률 확인)
가명정보 추출	결합키관리기관	결합신청자(결합키, 일련번호) → 처리기관(추출된 일련번호) → 결합신청자(가명정보 추출)

5 결합 및 추가 가명처리

1. 결합키 생성

- □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결합신청자는 결합키관리기관과 결합키 생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결합키관리기관으로부터 결합키 생성에 필요한 정보(Salt값)를 수신함
 - * 결합키 생성 항목, 인코딩 방식, 결합키 생성 알고리즘
 - 결합키 생성시에는 결합신청자 간 결합키 생성 항목, 인코딩* 방식, 알고리즘을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함
 - * 한글 인코딩 방식(EUC-KR, UTF-8)이 다를 경우 동일한 일방향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도 서로 다른 값으로 결합키가 생성되어 결합이 되지 않음(UTF-8 인코딩을 권고)

결합키 생성 예시



- ▶일반적으로 결합키의 대상은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임
- ▶ 결합키 생성 알고리즘은 결합키 생성 항목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일방향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함
 - ※ 일방향 암호화 알고리즘은 가명정보의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일방향 암호화 기법 중 SHA256 이상의 알고리즘(Salt값 포함)을 이용할 것을 권고함
 - ※ Salt 값의 길이는 Hash처리 결과값의 크기와 동일한 크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함

 *참고:'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2020.12.)'.개인정보위
- 결합신청자는 가명처리 대상 정보에 정보주체별로 중복되지 않는 일련의 값(일련번호*)을 생성함
- * 일련번호는 모의결합 시에는 활용되지 않으므로,모의결합 절차가 종료된 이후 생성할 수 있음

일련번호 생성 예시



일련번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A1	강감찬	090-4562-7895	1947	
A2	권율	090-7854-5689	1975	
A3	유관순	090-4567-9876	198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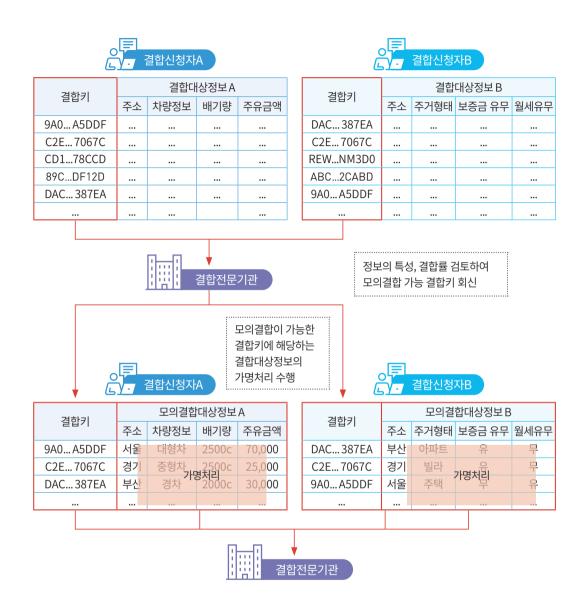
일련번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B1	유관순	090-4567-9876	1982	
B2	권율	090-7854-5689	1975	
В3	강감찬	090-4562-7895	1947	

□ 반복결합의 경우 결합신청자는 추후 반출되는 정보와의 연계·분석을 위하여 결합키에 사용된 결합키 생성 항목, 인코딩 방식, 알고리즘(Salt값 제외*)을 보관함

* 반복결합에 사용된 Salt값은 결합키관리기관이 보관하였다가, 추후 반복결합 진행시 재안내 예정

2. 모의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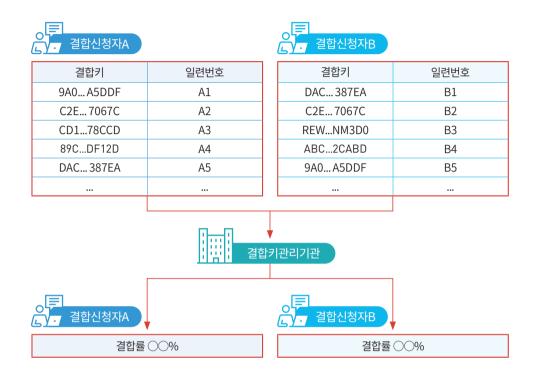
- □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결합신청자는 결합키관리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생성한 결합키를 결합전문기관에 전송함
- □ 결합전문기관은 모의결합대상정보의 특성, 결합률 등을 고려하여 모의결합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모의결합이 가능한 경우 모의결합대상정보(결합키)를 선정하여 해당 결합키를 결합신청자에게 전송함
 - ※ 결합전문기관은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결합신청자가 결합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의결합 대상 결합키를 선정
- □ 결합신청자는 결합전문기관으로부터 결합키를 제공받아 해당 모의결합대상정보를 가명처리하고 가명처리 내역과 함께 결합전문기관에 전송함



- □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자의 가명처리 내역을 확인하고(보완 필요시 보완 요청) 결합키를 사용하여 모의결합대상정보의 결합을 수행함
- □ 결합신청자는 결합전문기관(추가 가명처리 공간 등)에서 모의결합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음
 - 결합신청자는 모의결합 분석 결과에 따라 본결합의 진행 또는 종료를 결정할 수 있음 ※ 단, 결합신청자는 분석한 결과물 및 모의결합 정보를 반출할 수 없음
- □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자의 모의결합정보 분석이 완료되면 모의결합에 사용된 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3. 결합률 확인

□ 결합률 확인을 신청한 결합신청자는 결합키와 일련번호를 결합키관리기관에 전송함



- □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률을 측정하며 해당 결합신청자에게 해당 정보의 결합률을 통지함
 - 결합신청자는 결합률 확인 후 결합의 진행 또는 종료를 결정할 수 있음

4. 가명정보 추출

- □ 가명정보 추출을 신청한 결합신청자는 결합키와 일련번호를 결합키관리기관에 전송함
- □ 결합키관리기관은 추출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결합 목적 등)를 결합신청자로부터 제공받아 추출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추출이 가능한 경우 추출에 필요한 일련번호를 결합신청자에게 전송함

▶ 가명정보 추출의 가능여부 검토 및 대상 선정 기준

- (정보의 특성) 결합의 목적 및 데이터의 특성을 검토하여 결합되지 않는 정보의 수가 너무 적어 재식별 위험이 있는 등과 같은 정보주체에 대한 불이익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 필요한 경우 가명정보 추출 대상 조정
- (결합률) 전국민 데이터 등 대규모 데이터의 경우 결합되는 정보에 비해 많은 양의 정보를 가명처리 및 전송해야하는 부담 등을 고려. 필요한 경우 가명정보 추출 대상 조정

▶ 가명정보 추출 원칙

1. 결합되는 정보(B)에 결합되지 않는 정보 일부(비결합대상정보, C)의 일련번호를 추가 (결합되는 정보(B)의 수와 동일)하여 추출(추출 대상 정보, D)

〈결합신청자별 가명정보 추출〉

전체 정보(A)	결합되는 정보(B)	비결합대상정보(C) (결합되지 않는 정보 일부)	추출 대상 정보(D=B+C) (일련번호 수)
1,000,000	100,000	100,000	200,000

2. 추출되지 않는 정보(E)의 수가 1,000개 이하인 경우 정보의 특성을 검토하여 추출되는 비결합대상정보(C)의 수를 조정(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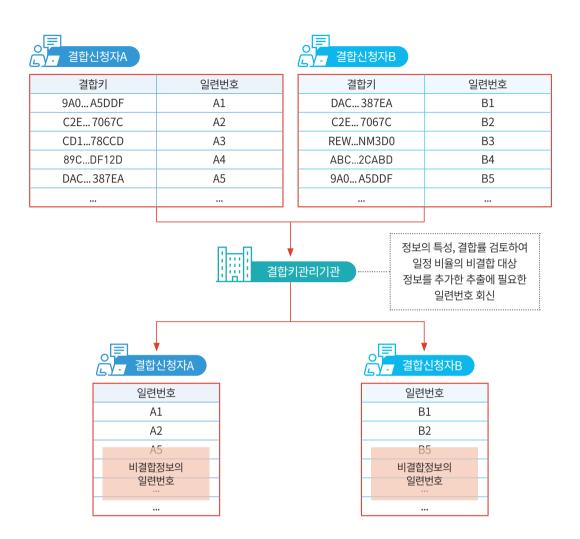
전체 정보(A) 결합되는 정보(B) 비결합대상정보(C)		추출 대상 정보 (D=B+C)	비추출 대상 정보 (E=A-D)	
5,000	2,000	2,000	4,000	1,000

•

전체 정보(A) 결합되는 정보(B) 비결합대상정보(C)		추출 대상 정보 (D=B+C)	비추출 대상 정보 (E=A-D)	
5,000	2,000	1,600	3,600	1,400

3. 결합률(B/A)이 50%를 넘는 경우 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 추출 불가

전체 정보(A) 결합되는 정보(B) 비결합대상정보(C)		추출 대상 정보 (D=B+C)	비추출 대상 정보 (E=A-D)	
5,000	2,700	2,300	(추출 불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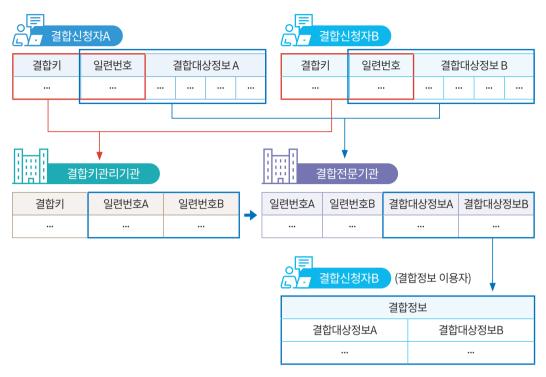


5. 가명처리 및 검토

- □ 결합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결합신청자는 가명처리 대상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결합대상정보를 결합전문기관에 전송함
 - ※ 결합신청자는 결합전문기관(지원 가능 기관에 한함)에 가명처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가명정보 추출을 신청한 결합신청자는 결합키관리기관이 제공한 추출에 필요한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해당 일련번호의 결합대상정보의 가명처리 내역(결합대상정보 등)을 결합전문기관에 전송함
 - ▶ 결합신청자가 보유한 개인정보 항목(예시)
 - 결합신청자(A):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차량 정보, 배기량, 주유금액 등
 - 결합신청자(B):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주거형태, 보증금 유무, 월세 유무 등 결합기 생성 항목
 - ▶ 결합신청자별 가명처리 대상 항목
 - 결합신청자(A): 주소, 차량 정보, 배기량, 주유금액 등
 - 결합신청자(B): 주소, 주거형태, 보증금 유무, 월세 유무 등
 - * 가명처리 대상 중 분석목적에 필요하며, 식별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항목인 경우 처리대상에서 제외 가능함
 - ※ 결합키 생성 항목을 결합대상정보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식별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활용하여야 함
- □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자가 제출한 결합대상정보 및 가명처리 내역을 검토함
 -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자에게 보완 사항을 적시하여 보완 요청함

6. 결합

- □ 결합신청자는 결합키와 일련번호를 결합키관리기관에 전송함
 - ※ 결합률 확인 또는 가명정보 추출을 위해 결합키와 일련번호를 기 전송하고 결합대상정보의 변경이 없는 경우 전송을 생략할 수 있음
- □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키와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하고 결합전문기관에 결합키연계정보를 전송함
 - ※ 반복결합의 경우 반복결합연결정보를 포함하여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함
- □ 결합전문기관은 결합키연계정보와 일련번호, 결합대상정보를 사용하여 결합함



※ 필요시 추가처리 및 분석 수행, 반출심사 후 반출 가능

7. 추가처리 및 분석

- □ 결합정보를 이용하는 결합신청자는 결합전문기관(추가 가명처리 등 공간)에서 결합정보의 식별 위험성(가능성)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추가 가명처리를 수행함
 - ※ 결합신청자는 결합전문기관(지원 가능 기관에 한함)으로부터 추가 가명처리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결합신청자는 결합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이 없거나 추가 가명처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가명처리 없이 반출신청이 가능함
- □ 결합신청자는 결합전문기관에 마련된 분석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갖춘 공간(추가 가명처리 등 공간)에서 결합정보를 분석할 수 있음
 - ※ 결합신청자는 결합전문기관(지원 가능 기관에 한함)에 결합정보의 분석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6 반출 및 활용

1. 반출신청 및 반출심사

- □ 결합정보를 반출하려는 결합신청자는 결합 고시 [별지 제4호] 반출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며 반출을 신청함
 - *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 처리 내역, 반출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반출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을 제출
 - ※ 반출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참고자료] 참고7. 반출신청서 작성 방법 (98p) 참고
- □ 반출신청을 받은 결합전문기관은 반출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하고 접수함
 -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해당 사유를 적시하여 결합신청자에게 보완 요청하고 보완사항을 확인한 이후 접수함
- □ 결합신청자가 반출을 요청하면 결합전문기관은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반출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결합신청자에게 통지함
 - 결합신청자는 결합전문기관으로부터 회의개최 일정 및 장소, 반출가능 예정 시기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받을 수 있음
 - 시계열 분석 등 반복결합의 반출심사는 2회부터 최초(첫회) 반출과 결합대상, 가명처리 방법 등이 거의 동일한 경우 서면회의 등으로 간소화할 수 있음
 - 반출심사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단 반출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결합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를 추가로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음
 - 반출심사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업무 경력이 있거나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그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결합 고시 제11조제2항)
 - 반출심사위원회는 결합 목적과 반출정보의 관련성, 특정 개인의 식별가능성, 반출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 등을 심사하여야 함(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3제4항, 결합 고시 제11조제3항)
- □ 결합신청자는 반출심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직접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음

2. 반출

□ 결합전문기관이 반출을 승인하면 결합신청자는 결합정보를 분석한 결과물을 반출하거나, 결합정보(데이터셋)를 반출할 수 있음

3. 활용

- □ 반출정보는 결합신청자가 반출심사 시 제출한 환경(가명정보 활용 형태, 처리 장소, 방법)과 목적범위에서 활용하는 것이 원칙임
 - ※ 결합신청자는 결합전문기관(지원 가능 기관에 한함)에 반출정보에 대한 분석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결합신청자가 반출정보를 반출심사 시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으나(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반출심사 시 제출한 처리 상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처리 상황에 맞게 가명처리하여 활용하여야 함
- □ 반복결합의 반출정보에는 반복결합연결정보가 포함되어 내부에서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음

7 안전한 관리

1. 안전한 관리

- □ 결합신청자는 반출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보호법 제28조의5 제1항), 재식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함
- □ 반출정보를 활용하는 결합신청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 결합신청자는 결합전문기관(지원 가능 기관에 한함)에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 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4장 안전성 확보 조치] (59p) 참고

2. 결합전문기관 업무지원 사항

- ▶ 결합전문기관은 보호법에서 규정한 가명정보 결합·반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관의 상황에 따라 가명처리 컨설팅, 분석 지원 등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 (모의결합) 결합 전 모의결합 절차를 수행*할 수 있음
 - * 모의결합 가능성 검토 및 통지, 모의결합대상정보 가명처리 수준 검토(필요시 추가처리 요청), 모의결합 수행
- □ (결합 전 처리) 결합 전 결합대상정보의 가명처리를 지원할 수 있음
- □ (반출 전 처리) 반출 전 결합정보의 추가 가명처리를 지원할 수 있음
- □ (분석) 반출 전 결합정보의 분석 및 반출 후 반출정보의 분석을 지원할 수 있음
- □ (교육) 가명정보를 반출하려는 결합신청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지원할 수 있음 * 반출정보의 안전조치에 관한 교육, 가명처리 지원 제도 안내 등

제 4 장

안전성 확보 조치

1 관리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수탁자 관리·감독 등의 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 제1항 제1호)
 - ※ 다만 개인정보 개념에 가명정보 개념이 포함되므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수립·시행된 내부 관리계획이 있을 경우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내용만 추가하여 수립·시행하는 것도 가능

제29조의5(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4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 및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이하 이 조에서 "추가정보"라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 1. 제30조 또는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 2.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다만 추가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 3.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분리.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가명정보를 취급할 자를 추가로 둘 여력이 없는 경우 등 접근 권한의 분리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 권한만 부여하고 접근 권한의 보유 현황을 기록으로 보관하는 등 접근 권한을 관리·통제해야 한다.
- ② 법 제28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
- 2.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 3.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 4.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 5.그 밖에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내부 관리계획에는 추가정보의 별도 분리 보관 및 이에 대한 접근권한 분리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함

▎ 가명정보 처리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예시)

- 가.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에 관한 사항
- 나.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분리에 관한 사항
- 다. 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마. 가명정보 처리 기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
- 바.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에 관한 사항
- 사. 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에 관한 사항
- ※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 참조
- ※ 가명정보 처리 내부 관리계획 작성 예시는 [참고자료] 참고8. 내부 관리계획 작성 예시 (100p) 참고
- ☑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시행하고,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관리 하여야 함

2. 수탁자 관리·감독의 의무(보호법 제26조)

-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가명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문서를 작성하여야 함
- ☑ 또한 위탁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가명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공개하여야하며,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가명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또는 재식별 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함

▎ 가명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예시)

구분	위탁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처리금지	가명정보를 위탁받은 범위 외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항
가명정보의 안전조치 사항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분리,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등에 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가명정보를 위탁하는 목적과 범위에 대한 사항
재위탁 제한	재위탁 가능한 범위에 대한 사항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가명정보, 추가정보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관리·감독사항
재식별 금지	가명정보를 제공받거나 처리를 위탁 받은 사업자 등은 다른 정보와 결합을 통해 재식별 시도가 금지됨을 명시
재식별 위험 발생시 통지	가명정보가 재식별 되었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명정보 처리 중지 및 위탁자에게 통지 의무 명시

▶ 가명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 특수조건 반영 사례(예시)

제()()조(재식별 금지)

- ① ○은 △으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한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은 △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 사항을 △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③ ○은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 ※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기업은 "○",제공한 기업은 "△"로 표시

3.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보호법 제30조)

-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함
 - ※ 다만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기 작성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있을 경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내용만 추가 가능

▶ 가명정보 활용 관련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될 사항(예시)

- 1. 가명정보 처리 목적
- 2. 가명정보 처리 기간(선택)
- 3. 가명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 4.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 5.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6. 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가명정보 활용 관련 개인정보 처리방침 반영 사례(예시)

제○○조(가명정보의 처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명)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 및 제3자 제공은 하지 않으며, 가명정보는 재식별 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별도 저장·관리하고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에 대해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구분	수집ㆍ이용 목적	처리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 연구	연령대별 △△ 등 분석	휴대전화번호, △△일시,△△유형	결합데이터 분석 완료시까지

2 기술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및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1.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 제1항 제2호)

- ☑ 개인정보처리자는 추가정보를 가명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고, 추가정보가 가명정보와 불법적으로 결합되어 재식별에 악용되지 않도록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접근통제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 추가정보와 가명정보는 분리하여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물리적인 분리가 어려운 경우 DB 테이블 분리 등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도 가능 함
 - * 논리적으로 분리할 경우 엄격한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함
 - ※ 추가정보의 활용 목적 달성 및 불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정보를 파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기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할 필요가 있음

2. 접근권한의 분리(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 제1항 제3호)

-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담당자를 가명정보 처리 업무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엄격하게 통제하여야 하며, 접근권한도 업무에 따라 차등부여 하여야 함
 - 가명정보를 취급할 자를 추가로 둘 여력이 없는 경우 등 접근권한의 분리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 접근권한 부여 및 접근권한의 보유 현황을 기록으로 보관하는 등 접근권한을 관리·통제하여야 함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
 -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가명처리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가명정보처리시스템 제외)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음
- ☑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가명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함
- ☑ 가명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 가명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 별로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 추가정보를 처리하는 자, 해당 가명정보 이외의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함
- ☑ 가명정보에 대한 처리 권한이 있는 자만이 가명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

3. 가명정보 처리 관련 기록 작성·보관(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5 제2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의 처리목적, 가명처리한 개인정보 항목,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

작성방법 예시

가명정보 처리 관리 대장

구분	내용
이용신청 접수번호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을 기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가명처리의 대상이 된 이용 항목을 말함 (예: 성별, 나이, 주소 등)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① 책임자: 가명정보 처리 관련 책임자 ②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를 처리하는자: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 또는 추가정보를 처리하는 자(필요시 처리자 명단) ③ 가명처리 일시: 가명처리한 일시 ④ 이용방법: 목적외 이용, 내부이용, 외부제공, 내부 결합,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결합 등
제공받는 자 (제3자 제공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명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명칭
관련 파일명	
가명정보 이용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가명정보 파기일자	년 월 일
대장 기록자	(인)
기록 확인자	(인)

3 물리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를 전산실이나 자료보관실에 보관하는 경우 비인가자의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 통제 등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 또한 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가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조저장매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4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보장하여야 함
-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여야함
 - 다만 이미 해당주체의 개인정보가 가명처리된 경우에는 가명처리 정지 요구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향후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으로 가명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함
 - ※ 가명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현행법상 재식별이 불가하며, 이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가명처리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보호법 제28조의5 제1항)

제28조의5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①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부록1

참고자료

참고1 개인정보 가명처리 기술 및 예시

1 개인정보의 가명·익명처리 기술 종류

※ 아래 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해 ISO/IEC 20889, 그리고 EU ENISA에서 발간한 보고서 등 국내·외 자료들을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표준이 아님

분류	기술	세부기술	설명		
개인정보 삭제	삭제기술	삭제 (Suppression)	• 원본정보에서 개인정보를 단순 삭제		
		부분삭제 (Partial suppression)	•개인정보 전체를 삭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부를 삭제		
		행 항목 삭제 (Record suppression)	•다른 정보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행 항목을 삭제		
		로컬 삭제 (Local suppression)	•특이정보를 해당 행 항목에서 삭제		
개인정보 일부 또는 전부 대체	삭제기술	마스킹 (Masking)	• 특정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백 또는 문자('*','_'등이나 전각 기호)로 대체		
	통계도구	총계처리 (Aggregation)	•평균값, 최댓값, 최솟값, 최빈값, 중간값 등으로 처리		
		부분총계 (Micro aggregation)	• 정보집합물 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행 항목에 해당하는 특정 열 항목을 총계처리. 즉, 다른 정보에 비하여 오차 범위가 큰 항목을 평균값 등으로 대체		
	일반화 (범주화) 기술	일반 라운딩 (Rounding)	•올림, 내림, 반올림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집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세세한 정보보다는 전체 통계정보가 필요한 경우 많이 사용		
		랜덤 라운딩 (Random roundir		• 수치 데이터를 임의의 수인 자리 수, 실제 수 기준으로 올림(round up) 또는 내림(round down)하는 기법	
		제어 라운딩 (Controlled rounding)	• 라운딩 적용 시 값의 변경에 따라 행이나 열의 합이 원본의 행이나 열의 합과 일치하지 않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원본고 결과가 동일하도록 라운딩을 적용하는 기법		
		상하단코딩 (Top and bottom coding)	전규분포의 특성을 가진 데이터에서 양쪽 끝에 치우친 정보는 적은 수의 분포를 가지게 되어 식별성을 가질 수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은 수의 분포를 가진 양 끝단의 정보를 범주화 등의 기법을 적용하여 식별성을 낮추는 기법		

¹⁾ EU ENISA(European Union Agency for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Recommendations on shaping technology according to GDPR provisions, An overview on data pseudonymisatin, November 2018

EU ENISA(European Union Agency for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Pseudonymisation and best practices, November 2019

분류	기술	세부기술	설명		
	일반화 (범주화) 기술	로컬 일반화 (Local generalization)	• 전체 정보집합물 중 특정 열 항목(들)에서 특이한 값을 가지거나 분포상 의 특이성으로 인해 식별성이 높아지는 경우 해당 부분만 일반화를 적용하여 식별성을 낮추는 기법		
		범위 방법 (Data range)	• 수치 데이터를 임의의 수 기준의 범위(range)로 설정하는 기법으로, 해당 값의 범위 또는 구간(interval)으로 표현		
		문자데이터 범주화 (Categorization of character data)	• 문자로 저장된 정보에 대해 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범주화하는 기법		
	암호화	양방향 암호화 (Two-way encryption)			
		일방향 암호화-암호학적 해시함수 (One-way encryption- Cryptographic hash function)	원문에 대한 암호화의 적용만 가능하고 암호문에 대한 복호화 적용이 불가능한 암호화 기법 키가 없는 해시함수(MDC, Message Digest Code), 솔트(Salt)가 있는 해시함수, 키가 있는 해시함수(MAC, Message Authentication Code)로 구분 암호화(해시처리)된 값에 대한 복호화가 불가능하고, 동일한 해시 값과 매핑(mapping)되는 2개의 고유한 서로 다른 입력 값을 찾는 것이 계산상 불가능하여 충돌 가능성이 매우 적음		
개인정보 일부 또는 전부 대체		순서보존 암호화 (Order-preserving encryption)	•원본정보의 순서와 암호값의 순서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암호화 방식 •암호화된 상태에서도 원본정보의 순서가 유지되어 값들 간의 크기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한 경우 안전한 분석이 가능		
		형태보존 암호화 (Format-preserving encryption)	권본 정보의 형태와 암호화된 값의 형태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암호화 방식 원본 정보와 동일한 크기와 구성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암호화가 가지고 있는 저장 공간의 스키마 변경이슈가 없어 저장 공간의 비용 증가를 해결할 수 있음 암호화로 인해 발생하는 시스템의 수정이 거의 발생하지 않도 토근화, 신용카드 번호의 암호화 등에서 기존 시스템의 변경 없이 암호화를 적용할 때 사용		
		동형 암호화 (Homomorphic encryption)	악호화된 상태에서의 연산이 가능한 암호화 방식으로 원래의 값을 암호화한 상태로 연산 처리를 하여 다양한 분석에 이용가능 악호화된 상태의 연산값을 복호화 하면 원래의 값을 연산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4세대 암호화 기법		
		다형성 암호화 (Polymorphic encryption)	가명정보의 부정한 결합을 차단하기 위해 각 도메인별로 서로 다른 가명처리 방법을 사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정보 제공 시 서로 다른 방식의 암호화된 가명처리를 적용함에 따라 도메인별로 다른 가명정보를 가지게 됨		
	무작위화 기술	잡음 추가 (Noise addition)	•개인정보에 임의의 숫자 등 잡음을 추가(더하기 또는 곱하기)하는 방법		

분류	기술	세부기술	설명		
		순열(치환) (Permutation)	 분석 시 가치가 적고 식별성이 높은 열 항목에 대해 대상 열 항목의 모든 값을 열 항목 내에서 무작위로 순서를 변경하여 식별성을 낮추는 기법 개인정보를 다른 행 항목의 정보와 무작위로 순서를 변경하여 전체정보에 대한 변경 없이 특정 정보가 해당 개인과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개인정보 일부 또는 전부 대체	무작위화 기술	토큰화 (Tokenisation)	가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토큰으로 변환 후 대체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직접 사용하여 발생하는 식별 위험을 제거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술 토큰 생성 시 적용하는 기술은 의사난수생성 기법이나 양방향 암호화, 형태보존 암호화 기법을 주로 사용		
		(의사)난수생성기 ((P)RNG, (Pseudo) Random Number Generator)	• 주어진 입력값에 대해 예측이 불가능하고 패턴이 없는 값을 생성하는 메커니즘으로 임의의 숫자를 개인정보와 대체		
가명·익명처리를 위한 다양한 기술 (기타 기술)		표본추출 (Sampling)	• 데이터 주체별로 전체 모집단이 아닌 표본에 대해 무작위 레코드 추출 등의 기법을 통해 모집단의 일부를 분석하여 전체에 대한 분석을 대신하는 기법		
		해부화 (Anatomization)	• 기존 하나의 데이터셋(테이블)을 식별성이 있는 정보집합물과 식별성이 없는 정보집합물로 구성된 2개의 데이터셋으로 분리하는 기술		
		재현데이터 (Synthetic data)	• 원본과 최대한 유사한 통계적 성질을 보이는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특성을 분석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법		
		동형비밀분산 (Homomorphic secret sharing)	• 식별정보 또는 기타 식별가능정보를 메시지 공유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두 개 이상의 쉐어(share)*로 대체 *기밀사항을 재구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하위 집합		
		차분 프라이버시 (Differential privacy)	특정 개인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 질의(Query)에 대한 응답 값으로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응답 값에 임의의 숫자 잡음(Noise)을 추가하여 특정 개인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도록 하는 기법 1개 항목이 차이나는 두 데이터베이스간의 차이(확률분포)를 기준으로 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2 개인정보의 가명 · 익명처리 예시

※ 아래 모든 예시는 각 기법의 적용에 대한 예시이며 전체 데이터에 대한 가명·익명처리에 대한 예시가 아닙니다.

1. 개인정보 삭제

▶ 삭제기술: 선택된 항목을 제거하는 기술

① 삭제(Suppression) 수치형데이터 문자형데이터

- -원본정보에서 개인정보를 단순 삭제
- ※ 이때 남아 있는 정보 그 자체로도 분석의 유효성을 가져야 함과 동시에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야하며, 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 등과 결합하였을 경우에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야함

성명	성별	나이	핸드폰번호	주소	통신료	단말기금액	누적 포인트
김철수	남	41세	010-6666-8888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8,700	1,198,700	356,800
이영희	여	61세	010-9999-2222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69,400	505,400	203,000
박민호	남	30세	010-2222-7777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104,400	1,604,400	198,000
이윤정	여	57세	010-3333-4444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954,800	3,954,800	20,532,000
최동욱	남	28세	010-5555-6666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83,600	883,600	400,900

삭제

성별	나이	통신료	단말기금액	누적포인트
남	41세	98,700	1,198,700	356,800
여	61세	69,400	505,400	203,000
남	30세	104,400	1,604,400	198,000
여	57세	954,800	3,954,800	20,532,000
남	28세	83,600	883,600	400,900

② 부분삭제(Partial suppression) 수치형데이터 문자형데이터

- 개인정보 전체를 삭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부를 삭제

성명	성별	나이	핸드폰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단말기금액	누적포인트
김철수	남	41세	010-6666-8888	.0-6666-8888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1,198,700	356,800
이영희	여	61세	010-9999-2222	99-2222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505,400	203,000
박민호	남	30세	010-2222-7777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104,400	1,604,400	198,000
이윤정	여	57세	010-3333-4444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954,800	3,954,800	20,532,000
최동욱	남	28세	010-5555-6666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83,600	883,600	400,900

삭제

성명	성별	나이	핸드폰번호	주소	통신료	단말기금액	누적포인트
김	남	41세	8888	3888 서울특별시 중구		1,198,700	356,800
0	여	61세	2222	부산광역시 북구	69,400	505,400	203,000
박	남	30세	7777	광주광역시 서구	104,400	1,604,400	198,000
0	여	57세	4444	전라남도 나주시	954,800	3,954,800	20,532,000
최	남	28세	6666	세종특별자치시	83,600	883,600	400,900

③ 행 항목 삭제(Record suppression) 수치형데이터 문자형데이터

- -다른 정보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행 항목을 삭제
- -통계분석에 있어서 전체 평균에 비하여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자료를 제거할 때 사용

성명	성별	나이	핸드폰번호	주소	통신료	단말기금액	누적포인트
김철수	남	41세	010-6666-8888	.0-6666-8888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1,198,700	356,800
이영희	여	61세	010-9999-2222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69,400	505,400	203,000
박민호	남	30세	010-2222-7777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104,400	1,604,400	198,000
이윤정	여	57세	010-3333-4444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954,800	3,954,800	20,532,000
최동욱	남	28세	010-5555-6666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83,600	883,600	400,900

삭제

성명	성별	나이	핸드폰번호	주소	통신료	단말기금액	누적포인트
김철수	남	41세	010-6666-8888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8,700	1,198,700	356,800
이영희	여	61세	010-9999-2222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69,400	505,400	203,000
박민호	남	30세	010-2222-7777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104,400	1,604,400	198,000
최동욱	남	28세	010-5555-6666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83,600	883,600	400,900

4 로컬 삭제(Local suppression) 수치형데이터 문자형데이터

- 특이정보를 해당 행 항목에서 삭제

(설명) 다른 누적포인트에 비하여 뚜렷이 구별되는 누적포인트를 항목에서 삭제

성명	성별	나이	핸드폰번호	주소	통신료	단말기금액	누적 포인트
김철수	남	41세	010-6666-8888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8,700	1,198,700	356,800
이영희	여	61세	010-9999-2222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69,400	505,400	203,000
박민호	남	30세	010-2222-7777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104,400	1,604,400	198,000
이윤정	여	57세	010-3333-4444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954,800	3,954,800	20,532,000
최동욱	남	28세	010-5555-6666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83,600	883,600	400,900

삭제

성명	성별	나이	핸드폰번호	주소	통신료	단말기금액	누적 포인트
김철수	남	41세	010-6666-8888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8,700	1,198,700	356,800
이영희	여	61세	010-9999-2222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69,400	505,400	203,000
박민호	남	30세	010-2222-7777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104,400	1,604,400	198,000
이윤정	여	57세	010-3333-4444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954,800	3,954,800	
최동욱	남	28세	010-5555-6666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83,60		883,600	400,900

5 마스킹(Masking) 수치형데이터 문자형데이터

- -특정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백 또는 문자('*','_'등이나 전각 기호)로 대체
- ※ 분류는 개인정보 일부 또는 전부 대체로 분류되지만, 기술적으로 마스킹된 부분은 데이터로써의 가치가 없어져 일부 문건에서는 삭제로 분류되기도 함

성명	성별	나이	핸드폰번호
김철수	남	41세	010-6666-8888
이영희	여	61세	010-9999-2222
박민호	남	30세	010-2222-7777
이윤정	여	57세	010-3333-4444
최동욱	남	28세	010-5555-6666



성명	성별	나이	핸드폰번호
김**	남	4*세	***_****
0 **	여	6*세	***_****
박**	남	3*세	***_****
0 **	여	5*세	***_****
최 **	남	2*세	***_****

2. 개인정보 일부 또는 전부 대체

▶ 통계도구:데이터의 전체 구조를 변경하는 통계적 성질을 가진 기법

① 총계처리(Aggregation) 수치형데이터

- 평균값, 최댓값, 최솟값, 최빈값, 중간값 등으로 처리
- ※ 단, 데이터 전체가 유사한 특징을 가진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그 데이터의 대푯값이 특정 개인의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킬 수도 있으므로 주의 필요

통신료		통신료	통신료		통신료		통신료		통신료
98,700		262,180	98,700		954,800		98,700		69,400
69,400		262,180	69,400	+1=11=1	954,800		69,400	+1 4 71	69,400
104,400	평균값	262,180	104,400	최댓값	954,800		104,400	최솟값	69,400
954,800		262,180	954,800		954,800		954,800		69,400
83,600		262,180	83,600		954,800		83,600		69,400
	_							_	
통신료		통신료		통신.	료		통신료		통신료
98,700		104,400		98,70	00		54,800		83,600
69,400	+14171	104,400		69,40	00	24	69,400	X 7171	83,600
104,400	최빈값	104,400		104,4	.00	2	83,600	중간값	83,600
954,800		104,400		54,80	00		98,700		83,600
104,400		104,400		83,60	00		104,400		83,600

①-1. 부분총계(Micro Aggregation) 수치형데이터

- -정보집합물 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행 항목에 해당하는 특정 열 항목을 총계처리즉, 다른 정보에 비하여 오차 범위가 큰 항목을 평균값 등으로 대체
- 동질 집합 내의 특정 항목을 총계처리 하거나 특정 조건에 너무 특이한 값이 있어 개인의 식별 가능성이 높지만 분석에 꼭 필요한 값인 경우 처리

(설명) 지역, 나이 기준으로 동질집합을 형성하고, 오차 범위가 큰 소득금액을 동질집합 내 평균값으로 대체

지역	나이	소득금액
서울	30대	5,987,900
서울	30대	28,169,700
서울	30대	3,009,600
나주	30대	4,607,300
나주	30대	3,560,800
나주	30대	2,940,100
세종	30대	6,088,400
세종	30대	2,789,200
세종	30대	5,048,300

지역	나이	소득금액
서울	30대	12,389,067
서울	30대	12,389,067
서울	30대	12,389,067
나주	30대	4,607,300
나주	30대	3,560,800
나주	30대	2,940,100
세종	30대	6,088,400
세종	30대	2,789,200
세종	30대	5,048,300

▶ 일반화기술: 범주화로도 불리며, 특정한 값을 상위의 속성으로 대체

① 라운딩(Rounding) 수치형데이터

1-1. 일반 라운딩

- 올림, 내림, 반올림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집계 처리하는 방법

나이
33세
61세
47세
66세
40세



올림	내림	반올림
40세	30세	30세
70세	60세	60세
50세	40세	50세
70세	60세	70세
40세	40세	40세

※ 적절하지 않은 라운딩의 경우 라운딩 후에도 남은 값의 유일성이 남게 될 수 있으며, 적용하는 단위에 대한 판단이 중요

금액	백 단위 라운딩
983,116,785	983,117,000
984,715,591	984,716,000
984,932,383	984.932.000
985,660,262	985,660,000
986,047,778	986,048,000

금액	백만 단위 라운딩
983,116,785	980,000,000
984,715,591	980,000,000
984,932,383	980,000,000
985,660,262	990,000,000
986,047,778	990,000,000

적절하지 않은 라운딩

①-2. 랜덤 라운딩(Random Rounding) 수치형데이터

- 수치 데이터를 임의의 수인 자리 수, 실제 수 기준으로 올림(round up) 또는 내림(round down)하는 기법

금액
869,250
4,559,120
13,601,564
979,118
122,848,878

만 단위 라운딩
십만 단위 라운딩
십만 단위 라운딩
만 단위 라운딩
백만 단위 라운딩

금액	
900,000	
4,000,000	
14,000,000	
900,000	
120,000,000	
	_

①-3. 제어 라운딩(Controlled rounding) 수치형데이터

- 라운딩 적용 시 값의 변경에 따라 행이나 열의 합이 원본의 행이나 열의 합과 일치하지 않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원본과 결과가 동일하도록 라운딩을 적용하는 기법
- ※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기 어렵고 복잡한 통계표에는 적용하기 어려우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 아직 실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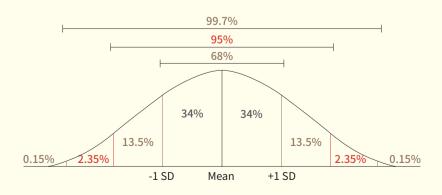
(설명) 나이에 대한 평균 분석 시 원본의 경우 평균이 51세가 되나 일반 라운딩을 적용한 경우 평균이 50세가 되어 결과가 다르게 되고, 이에 일부 값을 다르게 라운딩(제어)하여 평균 나이가 원본과 일치되도록 함

원본(나이)
33세
61세
50세
72세
43세
44세
23세
67세
68세
49세
평균:51세
합계:510



② 상하단코딩(Top and bottom coding) 수치형데이터

-정규분포의 특성을 가진 데이터에서 양쪽 끝에 치우친 정보는 적은 수의 분포를 가지게 되어 식별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은 수의 분포를 가진 양 끝단의 정보를 범주화 등의 기법을 적용하여 식별성을 낮추는 기법



③ 로컬 일반화(Local generalization) 수치형데이터

-전체 정보집합물 중 특정 열 항목(들)에서 특이한 값을 가지거나 분포상의 특이성으로 인해 식별성이 높아지는 경우 해당 부분만 일반화를 적용하여 식별성을 낮추는 기법

(설명) 서울 지역의 30대 중 분포 상 다른 금액에 비해 특이한 값을 동질집합 내 범주화 ※ 특이한 로컬(28,169,700)에만 3,009,600~28,169,700으로 범주화 할 수 있음

지역	나이	소득금액
서울	30대	5,987,900
서울	30대	28,169,700
서울	30대	3,009,600
나주	30대	4,607,300
나주	30대	3,560,800
나주	30대	2,940,100
세종	30대	6,088,400
세종	30대	2,789,200
세종	30대	5,048,300

지역	나이	소득금액	
서울	30대	3,009,600~28,169,700	
서울	30대	3,009,600~28,169,700	
서울	30대	3,009,600~28,169,700	
나주	30대	4,607,300	
나주	30대	3,560,800	
나주	30대	2,940,100	
세종	30대	6,088,400	
세종	30대	2,789,200	
세종	30대	5,048,300	

4 범위 방법(Data range) 수치형데이터

- 수치 데이터를 임의의 수 기준의 범위(range)로 설정하는 기법으로, 해당 값의 범위 또는 구간(interval)으로 표현

(예시) 소득 3,300만원을 소득 3,000만원~4,000만원으로 대체 표기

5 문자데이터 범주화(Categorization of character data) 문자형데이터

- 문자로 저장된 정보에 대해 상위의 개념으로 범주화하는 기법

품목	품목
분유	육아용품
기저귀	육아용품
젖병	육아용품
샤워타올	육아용품
욕실화	육아용품

▶ 암호화:정보 가공 시 일정한 규칙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대체

1 암호화(Encryption) 수치형데이터 문자형데이터

※ 암호화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암호이용활성화 관련 안내서 참조

①-1. 양방향 암호화(Two-way encryption)

- -특정 정보에 대해 암호화와 암호화된 정보에 대한 복호화가 가능한 암호화 기법
- 암호화 및 복호화에 동일한 비밀키로 암호화하는 AES, ARIA 등 대칭키(Symmetric key) 방식과 공개키와 개인키를 이용하는 RSA 등 비대칭키(Asymmetric key) 방식으로 구분되며, 키(key) 관리에 주의 필요

●-2. 일방향 암호화 – 암호학적 해시함수(One-way encryption-Cryptographic hash function)

- -원문에 대한 암호화의 적용만 가능하고 암호문에 대한 복호화 적용이 불가능한 암호화 기법
- 키가 없는 해시함수(MDC, Message Digest Code), 키가 있는 해시함수(MAC, Message Authentication Code), 솔트(Salt)가 있는 해시함수로 구분
- 암호화(해시처리)된 값에 대한 복호화가 불가능하고, 동일한 해시 값과 매핑(mapping)되는 2개의 고유한 서로 다른 입력값을 찾는 것이 계산상 불가능하여 충돌 가능성이 매우 적음

①-3. 순서보존 암호화(Order-preserving encryption)

- 원본정보의 순서와 암호값의 순서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암호화 방식
- 암호화된 상태에서도 원본정보의 순서가 유지되어 값들 간의 크기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한 경우 안전한 분석이 가능

①-4. 형태보존 암호화(Format-preserving encryption)

- 원본 정보의 형태와 암호화된 암호값의 형태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암호화 방식
- 원본 정보와 동일한 크기와 구성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암호화가 가지고 있는 저장 공간의 스키마 변경 이슈가 없어 저장 공간의 비용 증가를 해결할 수 있음
- 암호화로 인해 발생하는 시스템의 수정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토큰화, 신용카드 번호의 암호화 등에서 기존 시스템의 변경 없이 암호화를 적용할 때 사용

①-5. 동형 암호화(Homomorphic encryption)

- 암호화된 상태에서의 연산이 가능한 암호화 방식
- 원래의 값을 암호화한 상태로 연산 처리를 하여 다양한 분석에 이용가능
- 암호화된 상태의 연산한 값을 복호화 하면 원래의 값을 연산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4세대 암호화 기법

1-6. 다형성 암호화(Polymorphic encryption)

- 가명정보의 부정한 결합을 차단하기 위해 각 도메인별로 서로 다른 가명처리 방법을 사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 정보 제공 시 서로 다른 방식의 암호화된 가명처리를 적용함에 따라 도메인별로 다른 가명정보를 가지게 됨

▶ 무작위화기술: 속성의 값을 원래의 값과 다르게 변경

1 잡음 추가(Noise addition) 수치형데이터 문자형데이터

- -개인정보에 임의의 숫자 등 잡음을 추가(더하기 또는 곱하기)하는 방법
- 지정된 평균과 분산의 범위 내에서 잡음이 추가되므로 원 자료의 유용성을 해치지 않으나, 잡음값은 데이터 값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유효한 데이터로 활용하기 곤란하여, 중요한 종적정보는 동일한 잡음을 사용해야함(예시로 입원일자에 +3이라는 노이즈를 추가하는 경우 퇴원일자에도 +3이라는 노이즈를 부여해야 전체 입원일수에 변화가 없음)

생년월일	잡음추가	잡음추가생년월일
2011-12-05	+3	2011-12-08
2016-08-09	-2	2016-08-07
2009-02-11	-5	2009-02-06
1998-05-27	-6	1998-05-21
1991-06-18	+9	1991-06-27

② 순열(치환)(Permutation) 수치형데이터 문자형데이터

- -기존 값은 유지하면서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재배열하는 방법
- -개인정보를 다른 행 항목의 정보와 무작위로 순서를 변경하여 전체정보에 대한 변경 없이 특정 정보가 해당 개인과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 데이터의 훼손 정도가 매우 큰 기법으로 무작위로 순서를 변경하는 조건 선정에 주의 필요

(설명) 원본과 비교하여 평균 분석 시 전체 재배열은 결과가 다르며 동질집합 내 재배열 결과는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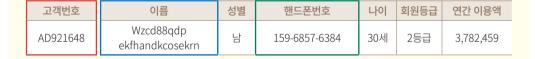
지역	나이	소득금액(원본)	소득금액(전체 재배열)	소득금액(동질집합 내 재배열)
서울	30대	5,987,900	2,789,200	3,009,600
서울	30대	8,169,700	4,607,300	5,987,900
서울	30대	3,009,600	5,987,900	8,169,700
나주	30대	4,607,300	2,940,100	2,940,100
나주	30대	3,560,800	8,169,700	4,607,300
나주	30대	2,940,100	5,048,300	3,560,800
세종	30대	6,088,400	3,009,600	2,789,200
세종	30대	2,789,200	3,560,800	5,048,300
세종	30대	5,048,300	6,088,400	6,088,400

원본	지역	서울	나주	세종
분석결과	평균소득	5,722,400	3,702,733	4,641,967
전체 재배열 분석결과	지역	서울	나주	세종
	평균소득	4,461,467	5,048,300	4,219,600
동질집합 내	지역	서울	나주	세종
재배열 분석결과	평균소득	5,722,400	3,702,733	4,641,967

③ 토큰화(Tokenisation) 수치형데이터 문자형데이터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토큰으로 변환 후 대체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직접 사용하여 발생하는 개인에 대한 식별 위험을 제거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술
- 토큰 생성 시 적용하는 기술은 의사난수생성 기법이나 일방향 암호화, 순서보존 암호화 기법을 주로 사용

고객번호	이름	성별	핸드폰번호	나이	회원등급	연간 이용액
D1304365	이공재	남	010-1234-5678	30세	2등급	3,782,459
의사난수 생성기	암호화 기법		형태보존 암호화			



4 (의사)난수생성기((P)RNG, (Pseudo) Random Number Generator)

수치형데이터 문자형데이터

- 주어진 입력 값에 대해 예측이 불가능하고 패턴이 없는 값을 생성하는 메커니즘으로 임의의 숫자를 개인정보에 할당
- ※ 난수는 원칙적으로 규칙적인 배열순서가 없는 임의의 수를 의미하며 컴퓨터는 원천적으로 입력에 의한 처리 결과를 반환하는 것으로 처리의 방법과 입력이 동일하면 항상 동일한 출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완전한 난수의 생성은 불가능

3. 가명·익명처리를 위한 다양한 기술(기타 기술)

1 표본추출(Sampling) 수치형데이터 문자형데이터

- -데이터 주체별로 전체 모집단이 아닌 표본에 무작위 레코드 추출 등의 기법을 통해 모집단의 일부를 분석하여 전체에 대한 분석을 대신하는 기법
- 확률적 표본추출 방법과 비확률적 표본추출 방법으로 나누어지며, 확률적 표본추출이 통계적 분석에 많이 사용
- 확률적 표본추출: 무작위 표본추출(복원 표본추출, 비 복원 표본추출), 계통적 표본추출, 층화 표본추출, 집락 표본추출 등
- -비확률적 표본부출:임의 표본추출, 판단 표본추출, 할당 표본추출, 누적 표본추출 등

② 해부화(Anatomization) 수치형데이터 문자형데이터

- 기존 하나의 데이터셋(테이블)을 식별성이 있는 정보집합물과 식별성이 없는 정보집합물로 구성된 2개의 데이터셋으로 분리하는 기술

Record ID	이름	성별	나이	월 납입금액	총 납부금액
1	조미선	F	33	817,250	66,300,000
2	홍길병	М	61	4,559,120	327,700,000
3	김영심	F	50	13,601,564	41,300,000
4	이미정	F	70	979,118	64,600,000
5	김경태	М	40	5,501,809	23,549,000
6	유영근	М	43	609,622	13,900,000

Record ID	이름	성별	나이
1	조미선	F	33
2	홍길병	М	61
3	김영심	F	50
4	이미정	F	70
5	김경태	М	40
6	유영근	М	43

Record ID		월 납입금액	총 납부금액
	1 817,250		66,300,000
	2	4,559,120	327,700,000
	3	13,601,564	41,300,000
4		979,118	64,600,000
5		5,501,809	23,549,000
	6	609,622	13,900,000

③ 재현데이터(Synthetic data) 수치형데이터 문자형데이터

- -원본과 최대한 유사한 통계적 성질을 보이는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특성을 분석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법
- ※ 원본 데이터 포함 여부에 따라 완전 재현 데이터(Fully Synthetic Data), 부분 재현 데이터 (Partially Synthetic Data), 하이브리드 재현 데이터(Hybrid Synthetic Data)로 구분

4 동형비밀분산(Homomorphic secret sharing) 수치형데이터 문자형데이터

- 식별정보 또는 기타 식별가능정보를 메시지 공유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두 개 이상의 쉐어(share)*로 대체
- *기밀사항을 재구성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하위 집합
- ※ 재식별은 가명·익명처리된 데이터의 쉐어를 소유한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만 가능

5 차분 프라이버시(Differential privacy) 수치형데이터 문자형데이터

- -특정 개인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와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 질의(Query)에 대한 응답 값으로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응답 값에 임의의 숫자 잡음(Noise)을 추가하여 특정 개인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도록 하는 기법
- 1개 항목이 차이나는 두 데이터베이스간의 차이(확률분포)를 기준으로 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 ※ 질의응답 값을 확률적으로 일정 크기 이하의 차이를 갖도록 함으로써 차이에 따른 차분 공격 방지

참고2 트이정보 처리 사례

1. 필요성

-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를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했더라도 '특이정보'를 통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음
 - 따라서 특이정보의 유형 등을 살펴보고 가명정보 내 해당 유형의 정보가 존재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특이정보는 관측된 데이터의 범위에서 많이 벗어난 아주 작은 값이나 아주 큰 값을 의미

2. 특이정보 사례

- ▶특정 기관의 급여가 2천만원에서 6천만원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일부 고액 급여 수령자가 발생하는 경우
- ▶ 특정 직업의 소속인원이 전국에서 약 300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지역에 극소수(1~2인)만 존재하고 있는 경우
- ▶ 정보공개 규정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에서 특정 나이대가 현저하게 적게 나타나는 경우

3. 특이정보 관찰 방법

- ▶ 정보의 특이정보는 3시그마규칙 또는 도수분포표 등을 이용하여 검토할 수 있음
 - 3시그마 규칙: 68-95-99.7규칙이라고도 하며, 정보의 분포의 3시그마(표준편차) 범위에 거의 모든 값들(99.7%)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
 - 도수분포표: 항목에 대한 값을 적당한 범위로 분류하고, 각 범위에 해당하는 수량을 조사하여 표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

(급여)

급여(만원)
2,200
3,400
4,600
5,300
10,000
6,700

※ 3시그마 규칙을 이용 하여 표준 ※ 지역에 대한 도수분포(빈도)를 편차에 벗어난 특이정보 검토

〈지역,직업〉

주소	직업	빈도
경기	국회의원	5
경기	국회의원	5
강원	국회의원	1
경기	국회의원	5
경기	국회의원	5
경기	국회의원	5

이용하여 특이정보 검토

〈나이〉

나이(세)	빈도
10~20	4
20~30	11
30~40	21
40~50	18
50~60	5
60~70	1

※ 특정 나이에 도수분포(빈도)를 측정 하여 특이정보 검토

4. 특이정보 처리 사례

▶ 삭제 기법을 활용한 목적별 사용 예시

- 분석 목적에 해당 정보가 없어도 분석에 크게 영향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한 기법, 해당 특이 정보를 삭제하여 개인 식별성을 제거

가. 로컬 삭제(Local suppression)

일반적으로 특이정보 처리에 많이 사용되는 기법으로 도수분포표를 활용하여 빈도가 적은 항목을 삭제하여 처리하는 방법

〈로컬삭제 기법 예시 〉

나이	주소	직업	월소득
35	서울	변호사	600만원
35	서울	변호사	700만원
35	서울	변호사	500만원
35	서울	변호사	700만원
35	서울	변호사	1,200만원
35	경기	변호사	800만원
35	경기	변호사	600만원
35	경기	변호사	1,300만원
35	경기	변호사	300만원
35	경기	변호사	900만원
35	경기	변호사	800만원
35	울릉도	변호사	200만원

나이	주소	직업	소득
35	서울	변호사	600만원
35	서울	변호사	700만원
35	서울	변호사	500만원
35	서울	변호사	700만원
35	서울	변호사	1,200만원
35	경기	변호사	800만원
35	경기	변호사	600만원
35	경기	변호사	1,300만원
35	경기	변호사	300만원
35	경기	변호사	900만원
35	경기	변호사	800만원
35	Null	변호사	200만원

나. 행 삭제(Record suppression)

특이정보로 인해 개인의 식별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용되는 기법으로 특이정보를 가지고 있는 행 전체를 삭제하여 처리하는 방법

※ 통계 분석에서 특이정보는 분석 목적을 달성하기보다 분석의 목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행 삭제 기법이 가장 적절한 기법이 될 수 있음

〈레코드 삭제 기법 예시〉

나이	주소	직업	월소득
35	서울	변호사	600만원
35	서울	변호사	700만원
35	서울	변호사	500만원
35	서울	변호사	700만원
35	서울	변호사	1,200만원
35	경기	변호사	800만원
35	경기	변호사	600만원
35	경기	변호사	7,300만원
35	경기	변호사	300만원
35	경기	변호사	900만원
35	경기	변호사	800만원
35	경기	변호사	200만원

나이	주소	직업	소득
35	서울	변호사	600만원
35	서울	변호사	700만원
35	서울	변호사	500만원
35	서울	변호사	700만원
35	서울	변호사	1,200만원
35	경기	변호사	800만원
35	경기	변호사	600만원
35	경기	변호사	300만원
35	경기	변호사	900만원
35	경기	변호사	800만원
35	경기	변호사 200만원	

▶ 통계적 기법의 종류와 목적별 사용 예시

- 분석 목적에 특이정보를 가지고 있는 해당 정보가 필요한 경우 활용하는 기법으로, 해당 특이 정보를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통계값으로 변경하여 사용

가. 단일 속성으로 대체(Combining a set of attributes into a single attribute)

숫자형 정보가 아닌 경우(문자형 등)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분류군의 상위로 묶어 처리하는 방법 ※ 특정한 직업이 희귀하여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상위의 분류로 변경하여 사용함으로 희귀성을 제거

〈단일속성 대체 예시〉

나이	주소	직업	월소득
35	서울	변호사	600만원
35	서울	변호사	700만원
35	서울	변호사	500만원
35	서울	변호사	700만원
35	서울	판사	1,200만원
35	경기	검사	800만원
35	경기	변호사	600만원
35	경기	변호사	1,300만원
35	경기	변호사	300만원
35	경기	변호사	900만원
35	경기	변호사	800만원
35	경기	변호사	200만원

나이	주소	직업	소득
35	서울	변호사	600만원
35	서울	변호사	700만원
35	서울	변호사	500만원
35	서울	변호사	700만원
35	서울	법조인	1,200만원
35	경기	법조인	800만원
35	경기	변호사	600만원
35	경기	변호사	1,300만원
35	경기	변호사	300만원
35	경기	변호사	900만원
35	경기	변호사	800만원
35	경기	변호사	200만원

나. 로컬 일반화(Local generalization)

선택한 행에서 일부 특정 값을 일반화하여 활용하는 기법으로, 다른 행의 속성값은 수정하지 않고 희귀 값을 가진 속성값만 처리하여 사용

〈로컬 일반화(상단 코딩) 기법 예시〉

나이	주소	직업	월소득
35	서울	변호사	600만원
35	서울	변호사	700만원
35	서울	변호사	500만원
35	서울	변호사	700만원
36	서울	변호사	1,200만원
36	경기	변호사	800만원
36	경기	변호사	600만원
36	경기	변호사	1,300만원
37	경기	변호사	300만원
84	경기	변호사	800만원
88	경기	변호사	200만원

나이	주소	직업	소득
35	서울	변호사	600만원
35	서울	변호사	700만원
35	서울	변호사	500만원
35	서울	변호사	700만원
36	서울	변호사	1,200만원
36	경기	변호사	800만원
36	경기	변호사	600만원
36	경기	변호사	1,300만원
37	경기	변호사	300만원
80초과	경기	변호사	800만원
80초과	경기	변호사	200만원

다. 부분 총계(Micro Aggregation)

부분 총계는 일부(특정그룹 값의 합)속성에서 정확한 통계적 값을 확인하는 기법으로, 로컬일반화 보다 일부 속성에서 정확한 값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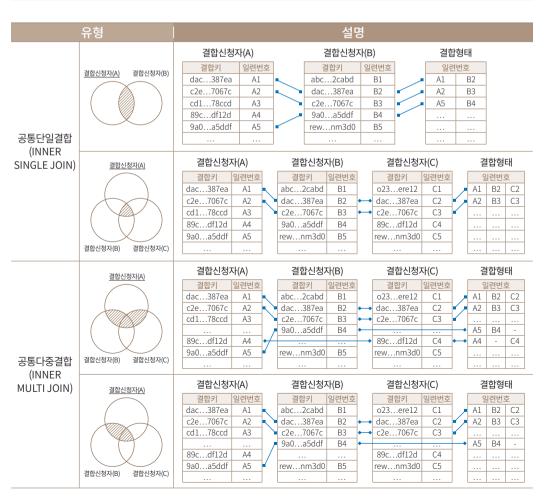
〈부분 총계 기법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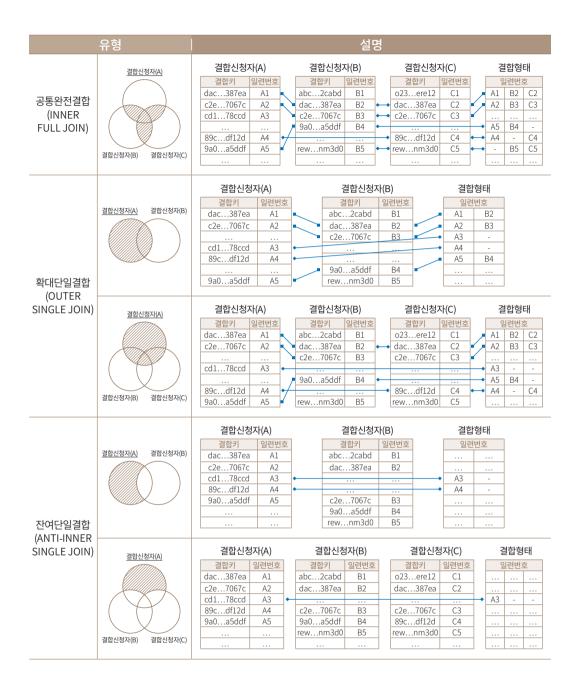
나이	주소	직업	월소득
35	경기	변호사	600만원
35	경기	변호사	700만원
35	경기	변호사	500만원
35	경기	변호사	700만원
35	경기	변호사	6,200만원
35	경기	변호사	800만원
35	경기	변호사	600만원
35	경기	변호사	7,300만원
35	경기	변호사	300만원
35	경기	변호사	900만원
35	경기	변호사	800만원
35	경기	변호사	200만원

나이	주소	직업	소득
35	경기	변호사	600만원
35	경기	변호사	700만원
35	경기	변호사	500만원
35	경기	변호사	700만원
35	경기	변호사	6,750만원
35	경기	변호사	800만원
35	경기	변호사	600만원
35	경기	변호사	6,750만원
35	경기	변호사	300만원
35	경기	변호사	900만원
35	경기	변호사	800만원
35	경기	변호사	200만원

참고3 결합의 다양한 유형

	공통결합 (INNER JOIN)		확대결합 (OUTER JOIN)	잔여결합 (ANTI-INNER JOIN)
단일	다중	완전	단일	단일
(INNER SINGLE)	(INNER MULTI)	(INNER FULL)	(OUTER SINGLE)	(ANTI-INNER SINGLE)
결합신청자(A) 결합신청자(B)	결합신청자(A) 결합신청자(B) 결합신청자(C)	결합신청자(A)	결합신청자(A) 결합신청자(B)	결합신청자(A) 결합신청자(B)
결합신청자(A)	결합신청자(A)	결합신청자(B) 결합신청자(C)	결합신청자(A)	결합신청자(A)
결합신청자(B) 결합신청자(C)	결합신청자(B) 결합신청자(C)		결합신청자(B) 결합신청자(C)	결합신청자(B) 결합신청자(C)





참고4 시계열 분석을 위한 반복결합 절차



결합신청자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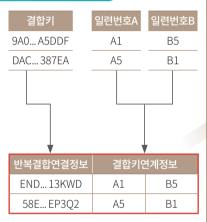
결합대상정보A		일련번호A	결합키	
37	서울	대형차	A1	9A0 A5DDF
51	부산	중형차	A5	DAC 387EA





결합키	일련번호B	결합대상정보B			
DAC 387EA	B1	빌라	보증금 유	월세 무	
9A0 A5DDF	B5	주택	보증금 무	월세 무	







결	합대と	남정보A	일련번호A	일련번호B	호B 결합대상정보		보B
37	서울	대형차	A1	В1	빌라	보증금 유	월세 무
51	부산	중형차	A5	B5	주택	보증금 무	월세 무

,	반복결합연결정보	결합키연계정보		
	END 13KWD	A1	B5	
	58E EP3Q2	A5	B1	

반복결합연결정보	결합정보						
END 13KWD	37	서울	대형차	주택	보증금 무	월세 무	
58E EP3Q2	51	부산	중형차	빌라	보증금 유	월세 무	



- ① 결합신청자는 가명처리 대상 정보에 정보주체별로 일련번호를 생성하고, 결합키관리기관과 협의한 방법에 따라 결합키를 생성
 - 생성된 결합키와 일련번호는 결합키관리기관으로 송신
- ②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신청자로부터 수신받은 결합키를 활용하여 1) 시계열 분석에 필요한키(반복결합연결정보)와 2)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
 - ※ 일반적인 결합의 경우 추가적인 시계열 분석에 필요한 키를 생성하지 않음
- ③ 결합키관리기관은 생성한 1), 2)의 정보를 결합전문기관에 송신하고, 결합전문기관은 수신받은 2)를 활용하여 결합신청자의 가명정보를 결합
- ④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정보에 1)을 포함하여 반출하고, 결합신청자는 반출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수행
 - ※ 유의사항: 반복결합 신청자는 추후 반출되는 정보와의 연계·분석을 위하여 결합키에 사용된 결합키 생성항목, 인코딩 방식, 알고리즘(Salt값 제외)을 보관하여야 함

┃ 추가 반복결합 신청 및 활용 방법

결합신청자가 추가 시계열 분석을 위한 반복결합을 신청하는 경우 결합신청자는 최초 반복결합 신청시 사용한 방식에 따라 결합키를 생성(Salt값은 결합키관리기관이 제공)하여 일련번호와 함께 결합키관리기관에 전달하고, 결합 후 반출된 반출정보에 포함된 1)의 정보를 활용하여 내부에서 연계하여 활용

※ 시계열 분석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 이를 결합키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결합키관리기관은 해당 결합 후 보관하고 있는 1)의 생성방법을 삭제

참고5 가명처리 및 결합 목적 증빙 자료 예시

통계작성 계획서

통계명		
대표 참여진	소속	
・ ・	담당자명	
통계작성 배경 및 목적		
통계작성 대상자 수		
통계작성 계획 및 방법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붙임. 상세 통계작성	계획서 등	

과학적 연구 계획서

연구명		
여기지	소속	
연구진 -	연구책임자	
연구 배경 및 목적		
예상 연구 기간		
연구 대상자 수		
연구 방법		
연구내용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붙임. 상세 연구계획/	서등	

공익적 기록보존 계획서

공익적 기록보존명		
대표 참여진	보관기관명	
(기록보관 기관)	담당자명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보존기간		
공익적 기록보존 방법		
내용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붙임. 상세 계획서 등		

참고6 결합신청서 작성 방법

		<u>①</u> 결합신 ³	청서		2	신청번호			
□ 가명	정보 제	헤공 ፟☑ 가명정보 제공+	결합정보 이용	□ 결힙	r정보 이용	접수번호			
			결합신청자						
기관명		A사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	. —	000	-00-0000			
주소	(0007000	대표자'	경		000			
담당자		홍길동	담당자 연 (전화, e-n) () () () () () () () () () () () () ()			
유형		[]개인 [∨]	공공기관 [] 비영리	믜법인 [] 민간기관			
			결합 개요						
 ③ 반복결	합	[∨] 해당없음	[]최초	[]추;	 가(결합접수번	호:)			
4 추가절차	신청	결합률 확인	[∨] 가명정	성보 추출 [[/] 모의	결합[]			
			 데공자			해당없음[]			
파일명	Ħ			abc					
제출 방	·법]	∨]온라인	[] 오프라인				
제출 예정	정일		0000년	○○월	○○일				
제공정보	요약	파일 크기(○.○GB) 전체	┃레코드 수(○○	0,00	○개) 모의결	합 레코드 수(○○○개)			
전체 가명 제공자명(총 2개 : A사, B사						
지원 요청	사항		[∨] 결합 신청	에 필요한	· 가명처리				
		6 결합정보	기용자			해당없음[]			
 결합 목	·적	[]통계작성	[∨] 과학적	덕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세부 결합	목적		구체적	덕목적 설명	명				
분석공간	이용	[]추가 가명치	리만 수행 [∨]결합 [:]	정보 분석	[] 이용안함			
지원 요청	사항		[∨] 반출 전	처리 [∨]분석				
		보호법」제28조의3제1항 달 반에 결합신청서를 위와 같							
)()()()(년 	○○월 ○○일			
			결합신	청자		(서명 또는 인)			
		결합전문기	기관의 장		귀하				
7 첨부 서류	2. 김 3. 김 1 *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결합신청자 관련 서류 1부 2. 결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자에 한함) 3. 결합 대상 가명정보에 관한 서류(전체 항목명, 가명처리 대상 항목명*, 가명처리 내역 등** 1부(가명정보 제공자에 한함) * 결합키 생성에 사용된 항목 제외 ** 결합대상정보가 확정된 이후에 제출							

1. 결합신청서 작성

- ▶ (작성 주체) 결합신청서는 결합신청자*별로 각자 제출하는 것이 원칙
 - * 가명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 현재 가명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결합된 가명정보를 처리할 예정인 개인정보처리자
 - 작성자가 해당되는 결합신청자의 유형(가명정보 제공, 가명정보 제공 및 결합정보 이용, 결합 정보 이용) 표기

2. 신청번호 및 접수번호

- ▶ (신청번호) 결합신청자 중 대표자*가 결합종합지원시스템(link.privacy.go.kr)을 통해 발급받은 번호
 - * 결합 신청에 있어 총괄 관리 · 감독을 수행할 결합신청자
- ▶ (접수번호) 결합전문기관이 결합신청자가 제출한 결합신청서를 접수할 때 발행하는 번호, 결합신청서 제출 시 공란으로 제출

3. 반복결합

- ▶ 추후 동일한 목적/형태 등으로 주기적·반복적 결합을 수행하는 경우
 - (최초) 반복결합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 (추가) 최초 반복결합이 완료된 이후 반복결합을 추가로 신청한 경우 최초 반복결합 신청시 발급되었던 결합 접수번호 기재

4. 추가절차 신청

- ▶ 결합률 확인, 가명정보 추출, 모의결합*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사항을 체크(중복체크 가능, 선택사항)
 - * 모의결합의 경우 결합전문기관별로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신청하려는 결합전문기관이 모의결합을 지원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 필요

5. 가명정보 제공자(개인정보처리자)

- ▶ 결합을 위해 가명정보를 결합전문기관에 제공하는 자가 작성하며, 가명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는 해당없음에 체크하고 나머지 항목은 공란
 - 가명정보 파일명, 제출 방법, 제공 정보 요약, 전체 가명정보 제공자명(총수)*, 지원 요청 사항** 등 작성
 - * 해당 결합을 신청하는 가명정보 제공자의 전체 기관명 및 전체 기관수(총 ○개)
 - ** 가명처리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가명정보 제공자는 결합전문기관에 결합 전 가명처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이 경우 해당 결합전문기관의 지원여부 확인 필요)

6. 결합정보 이용자(개인정보처리자)

- ▶ 결합된 가명정보를 이용하려는 자(현재 가명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포함)가 작성하며, 가명 정보를 제공하나 결합된 가명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자는 해당없음에 체크하고 공란
 - 결합 목적, 분석공간 이용여부*, 지원 요청 사항(중복체크 가능)** 작성
 - * 결합정보를 결합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추가 가명처리 및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선택사항) 체크
 - ** 결합정보 반출 전 결합전문기관에 가명·익명처리, 결합정보 분석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원 사항란 표시(이 경우 해당 결합전문기관의 지원여부 확인 필요)

7. 첨부 서류

- ▶ 각 첨부 서류별 제출 주체는 아래와 같으며,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결합된 정보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 첨부 서류 제출 필요
 - 첨부 서류는 결합신청 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결합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가명처리 대상 정보가 확정된 이후 결합 대상 가명정보에 관한 서류* 제출 가능
 - * 가명정보에 관한 서류 중 결합대상정보는 결합전문기관에 제출함

	가명정보 제공자	결합정보 이용자
1. 결합신청자 관련 서류	0	0
2. 결합 목적 관련 서류		0
3. 결합 대상 가명정보에 관한 서류	0	

참고7 반출신청서 작성 방법

		① 반출신청	2		접수번호 합수번호				
			결합신청자						
기관명		A사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000-00-0000					
주소	С	0007000	대표자명			000			
담당자		홍길동	담당자 연락처 (전화, e-mail)	00		0000-0	000		
			③ 결합 유형						
반복결합	탈		[]최초	[]	추가				
			4 반출 개요						
파일명			ccdab						
반출 목적	덕	[]통계작성	[∨] 과학적 연구	[] 공익	적 기록보존	등		
세부 반출 9	목적		구체적 목적	설명					
반출정보유	우형	[∨] 가명정보	[] 법 제58조의	2에 하	당하는	정보(익명정	 당보)		
제공 받는 병	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 결합전문기관 내 분석공간					
지원 요청 /	사항	[∨] 반출된 정	보의 분석	[\	[∨]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가명정	성보의	호법」제28조의3제2항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1문기관에 반출신청서를	고시」제10조제3항에	따라 결	합된 정		-기		
			결합신청자			(서명	또는 인)		
		결합전문	기관의 장		귀하				
(5) 첨부 서류	2	반출 대상 정보에 관한 반출 목적을 증명할 수 반출정보의 안전조치계	있는 서류 1부(추가적인	l 서류 기	데출이				

1. 반출신청서 작성

- ▶ (작성 주체) 결합정보 또는 분석결과 등을 결합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하고자하는 자는 반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제출
 - ※ 가명정보를 제공만 하는 자와 결합정보를 결합전문기관 내의 분석공간에서 분석만을 수행하는 자는 반출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

2. 반출접수번호 및 결합접수번호

- ▶ (반출접수번호) 결합전문기관이 제출된 반출신청서를 접수할 때 발행하는 번호, 반출신청서 제출 시 공란으로 제출
- ▶ (결합접수번호) 결합전문기관이 제출된 결합신청서를 접수할 때 발행하였던 번호

3. 결합 유형

▶ 반복결합을 신청한 자는 최초/추가 여부를 체크하며, 반복결합이 아닌 경우 공란

4. 반출 개요

- ▶ 결합정보를 반출하려는 결합신청자는 파일명(반출할 결합 결과물), 반출 목적, 반출정보 유형 등을 작성 ※ 결합신청자는 반출심사 전인 경우 결합 목적과 반출 목적 변경 가능
 - (반출정보 유형) 반출을 신청하려는 자가 정보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가명 또는 익명으로 판단하여 표기
 - (제공받는 방법) 결합전문기관등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는 온라인, USB등 저장장치를 이용해 반출하는 경우는 오프라인, 결합전문기관이 제공하는 분석공간을 이용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표기
 - (지원 요청사항) 정보의 분석을 위해 결합전문기관의 지원이나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면 표기

5. 첨부 서류

- ▶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모든 서류를 제출
 - (반출 대상 정보에 관한 서류) 분석공간을 통해 추가 가명처리가 수행되어 반출 대상 정보가 당초 제출한 결합 대상 가명정보와 상이한 경우에만 제출하고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반출 목적 관련 서류) 반출 목적이 당초의 결합 목적과 달라진 경우(결합 목적과 반출 목적의 양립 가능성 검토 필요)만 제출하고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안전조치 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부 관리계획, 운영 지침 등 반출정보의 안전조치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

참고8 내부 관리계획 작성 예시

제○조(가명정보 및 추가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1. 가명정보에 대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2.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실태 점검 및 관리
- 3. 가명처리 및 적정성 검토 현황 관리
- 4.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대한 관리·감독
- 5. 가명정보 처리 현황 및 관련 기록 관리
- 6.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7.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처리 위탁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해당 시)
- 8. 가명정보에 대한 재식별 모니터링 및 재식별 시 처리 방안의 수립·시행
- 9. 그 밖의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보호에 관한 사항

제○조(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의 분리보관) ① 가명정보는 가명처리가 완료되면 가명처리 전 개인정보와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 ② 가명처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정보는 가명정보와 분리 · 보관하여야 한다.
- ③ 가명처리 전 개인정보,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는 물리적으로 분리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물리적 보관이 어려운 경우 논리적인 분리를 시행할 수 있다.
- ④ 논리적으로 분리·보관하는 경우 엄격한 접근통제를 적용해야 한다.

제○조(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분리) ① 가명처리가 완료되면 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의 접근권한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엄격하게 통제하여야 하며, 업무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 하여야 한다.

- ②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권한과 가명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 ③ 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도록 하고 이 기록은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조(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가명정보와 추가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가정보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생성 즉시 삭제하도록 한다. 단, 시계열 분석 등의 이유로 추가정보가 필요한 경우 저장 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조(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교육) ① 가명정보 관리책임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가명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가명정보 보호 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1.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2.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3. 재식별 금지에 관한 사항
- ③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교육은 개인정보 보호교육과 함께 수행할 수 있으며 교육을 실시한 결과 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조(가명정보 처리 기록 작성 및 보관) ① 가명정보의 처리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가명정보 처리 대장에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1.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 2.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 3.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 4.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 5. 그 밖에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조(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①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1.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 2. 가명정보 처리기간(선택)
- 3. 가명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 시)
- 4. 가명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 시)
- 5. 처리하는 가명정보의 항목
- 6.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조(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 ①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가명정보에 대한 재식별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한다. ②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중 특정 개인에 대한 재식별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처리를 중단하고 이를 가명정보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한 후 수립된 재식별 시 처리 방안에 따라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참고9 적정성 검토 관련 서식 예시

※ 아래 참고자료는 적정성 검토 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자료로써 표준이 아니며,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다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접수번호			접수일							
	조직/부서명									
신청자	담당자 직위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1-1 [7.7]	□ 통계작성	성 □ 과학적	덕 연구		공익적 기	록보	!존		
	처리 목적	세부내용 :								
	활용 형태	□ 내부이용	□ 제3자 제공	3 [] 결합전	년문기관·	을 통	한 결합		
	이용 주체	□ 동일 가	인정보처리자		3자(제	공받는 7	나) 제공	공		
	처리 환경		□내부 □외부							
	처리 장소		□ 폐쇄 환경 □ 제한 없음							
빈	보복 제공 여부	□ 1회 제공 □ 시계열 분석 등을 위한 반복 제공(회 예정)								
	제공 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제공 받는 자		내부) □ 동일부/ 외부) □ 제3자, ?		□ 타 [‡] 기관 제					
	가명처리 대상 명칭									
신청 명세	데이터 내역									
	가명정보 이용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개	월)		
		위와 같이 가명정보				Έ	_	월	일	
			신성인('	부서장명)			(/	네명 또는	를 인) 	
험부서류	2. 활용데이터 요구 = 3. 데이터 처리 위탁	1. 개인정보 유형 분류표 2. 활용데이터 요구 수준표(선택) 3. 데이터 처리 위탁 계약서(위탁 계약의 경우) / 추후 제출 4. 데이터 제공 계약서(제3자 제공의 경우) / 추후 제출								

개인정보 유형 분류표

순번	항목명	개인정보유형	비고
1		개인식별정보/ 개인식별가능정보	민감성정보/비민감성정보 등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활용데이터 요구 수준표

순번	항목명	요구 수준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가명정보 처리 기초자료 명세서

					신청	기관 정	보				
フ	관명										
	주소										
데	이터명					평가	목적				
데이	터 수집										
이용	용 방법										
0	용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데	기터 명서	II				
 번호	구분				-11	1-1 0^		 사항			
	1 4							-/10			
1	데이터 특	특징									
	데이트	-1									
2	생성 방										
3	데이트	+									
3	제공방	법									
4	데이터 관	<u></u> 라리									
	환경										

적정성 검토 결과서(위원용)

접수번호										
검토위원 정보	성명		소속				직위			
검토 대상] 신규	□ 보완	<u></u>				
검토 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최종검토결과		□ 적정(승인)	□ 조건부	브 승인	□부	적정(반급	 력)		
		가명정	보 목적 적합	합성			□적	l합	□ 미흡	
		가명정보	이용항목	적합성			□적	합	미흡	
세부결과		식별위험성 검	토 결과 보:	고서 적정	성		□적	합	□미흡	
세구걸시		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 정	의표 적정	성성		□적	합	□미흡	
		처리 수준에 따	른 처리 결	과의 정혹	∤성		□적	l합	□ 미흡	
		처리 결과의	기목적 달성	기능성			□적	합	□ 미흡	
종합검토의견	% ?	넘토 결과가 조건부	브 승인인 경	우 보완/	, 항을 부	적정인	경우 사유	² 를 상 <i>/</i>	네히 기재	
종합검토의견	* ?	범토 결과가 조건부 위와 같이 적			투지합니다			을 상 ⁾		ᅙᄱ

이용신청								
접수번호								
검토 대상				□신규	□ 보원	<u></u>		
검토 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최종검토결과		□조	(승인)	□ 조건부	브 승인	□ 부적정([반려)	
종합검토의견								
		위와 같이	기 적정성 검	토 결과를 통	통지합니다	ł.		
						년	월	Q
서명란	위원정	il D	검토	위원	검.	토위원	사내 개인? 책임	
.10 5	이름	(인)	이름	(인)	0 =	를 (인)	이름	(인)

비밀유지의무 서약서

본인은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와 관련한 활동으로 얻어진 모든 정보에 대하여
○○○○○○○의 허락 없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본 서식에 서명함으로써, 본인은 정보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합당한 역할과
완전한 책임을 다 할 것에 동의합니다.

서딩	병일:	
소	속:	
성	명:	
ιН	며.	



이해상충 서약서

접수번호	
가명정보 이용신청자명	
적정성 검토 회의명	

본인은 상기 적정성 검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적정성 검토 대상 가명정보 및 가명정보 이용신청자과 이해관계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이해 관계 내용	예	아니오
1	적정성 검토 대상 가명정보를 이용할 예정이 있는지		
2	적정성 검토 대상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경제적·비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3	가명정보 이용신청자와 고용관계(상근, 비상근/ 공식, 비공식 등)에 있는지		
4	가명정보 이용신청자로부터 본 적정성 검토 비용 외에 검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비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		
5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이 소속된 회사가 위에서 기술된 것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6	그 밖에 적정성 검토 대상 가명정보 또는 가명정보 이용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본인이 확인한 모든 내용은 정확히 기술되었으며 만약 평가 진행 중에 의뢰기관에 대한 이해관계가 변동되는 이해상충이 생기는 경우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XXX에 통지하겠습니다.

년	원	일

서약자: (인)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확약서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제28조의4)및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시행령 제29조의5)를 성실히 이행하고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를 이행·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관련 법적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직인)

참고10 가명정보 처리 관련 실무 서식 예시

가명정보 관리대장

(여러 가명처리 기록 서식)

일련 번호	이용 신청 접수번호	이용신청자 (부서/이름)	이용신청기간	결합 유무	처리목적	제공 받는자 (제3자제공 포함)	파기 일자	대장 기록자	기록 확인자
		/	~						
1	가명처리 개인정보항목				가명정보 파일명				
		/	~						
2	가명처리 개인정보항목				가명정보 파일명				
		/	~						
3	가명처리 개인정보항목				가명정보 파일명				
		/	~						
4	가명처리 개인정보항목				가명정보 파일명				
		/	~						
5	가명처리 개인정보항목				가명정보 파일명				

추가정보 관리대장

신청서	이용·제공	신청자	보유	생	성	이용			파기		분리보관	최종
접수번호	신청기관	264	기간	생성일	담당자	이용일	사유	담당자	파기일	담당자	확인자	확인자

가명정보 접근 권한 관리대장

신청접수번호	담당자	책임자
가명정보 관리대장 번호 동일		

번호	소속(부서)	사용자명	사용자IP	가명정보 관련 업무목적	권한 범위	권한 부여일자	권한 말소일자	비고
				분석/내부결합 등	열람/수정/삭제 등			

추가정보 접근 권한 관리대장

신청접수번호	담당자	책임자
가명정보 관리대장 번호 동일		

번호	소속(부서)	사용자명	사용자IP	추가정보 관련 업무목적	권한 범위	권한 부여일자	권한 말소일자	비고
					열람/삭제 등			

가명정보 파기대장

일련 번호	가명정보 이용 신청번호	파기 사유	가명정보 파기일자	가명정보 파기 방법	파기 신청자	파기 수행자	파기 확인자
1							
2							
3							
4							
5							
6							
7							
8							
9							
10							

추가정보 파기대장

일련 번호	가명정보 이용 신청번호	파기 사유	추가정보 파기일자	추가정보 파기 방법	파기 신청자	파기 수행자	파기 확인자
1							
2							
3							
4							
5							
6							
7							
8							
9							
10							

부록 2

적정성 검토 시나리오

유통분야

A유통업체는 상품군별 판매추이에 대한 통계작성을 위한 데이터 제공을 요청받아 B통계전문업체에게 다음과 같이 판매 데이터를 제공하려 한다.

☑ 데이터의 이용 목적

-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상품군별 판매추이에 대한 통계작성으로 지속적인 분석을 위해 2019년 1월 부터 12월까지의 상품 매출 데이터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상품 매출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함

☑ 데이터 특징

- 동일 기간의 고객 구매 데이터를 제공 목적에 맞게 원본데이터를 가공하여 제공
- 전체 820만명의 고객 중 50%를 샘플링하여 410만건을 제공

☑ 데이터의 이용 화경

- 데이터 이용자는 B통계전문업체 임
- B통계전문업체와는 데이터 제공에 대한 계약을 맺어 제공함
- B통계전문업체는 다양한 통계분석을 통해 통계정보를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임
- B통계전문업체는 기존에 개인정보의 유출사고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그 이후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여 시스템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ISMS-P인증을 취득한 상태임
- 개인정보의 분석환경은 인터넷과 분리된 환경에서 별도의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음
- B통계전문업체는 가명정보에 대한 내부 관리계획을 기존의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음
- 모든 연구원에 대해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았으며 B통계전문업체 명의의 보안 확약서도 제출받았음
- 관련 연구원들은 모두 10년이상 통계를 생성하는 분석업무를 수행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공하는 데이터에는 직장이 B통계전문업체 인력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음

① 사전준비 단계에서 필요서류가 법/제도 목적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

가명정보 이용·제공 신청서

접수번호	ZZANG-20	ZZANG-20220522001		2022년 5월 22일		
	조직/부서명		A 유통회사 구매부			
신청자	담당자 직위	과장	담당자 성명	이유통		
	전화번호	02-1234-5678	이메일 주소	gamyeongzzang@utong.com		
		☑ 통계작성	성 □ 과학적	寸 연구 □ 공익적 기록보존		
	처리 목적	코로나 이전과 코르		군별 판매 추이에 대한 통계 작성을 위한 보의 제공		
	활용 형태	□ 내부이용	☑ 제3자 제공	금 □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결합		
	이용 주체	□ 동일 가	l인정보처리자	☑ 제3자(제공받는 자) 제공		
	처리 환경		□ 내부	□외부		
	처리 장소		☑ 폐쇄 환경	□ 제한 없음		
Ę	보복 제공 여부	☑ 1회 제공	□ 시계열 분석	덕 등을 위한 반복 제공(회 예정)		
	제공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제공 받는 자		(내부) ☑ 동일부서 □ 타부서 (외부) □ 제3자, 결합전문기관 제공				
	가명처리 대상 명칭	자사의 고객 구매정보				
신청 명세	데이터 내역	구매정보 중 2019년 구매정보데이터	1월 ~ 2019년 12	중 회원가입이 2019년 1월 이전인 고객으 월, 2021년 1월 ~ 2021년 12월 까지의 ! 중 50% 무작위 샘플링한 410만명의 정박		
	가명정보 이용 기간	2022년 4월 1일 ~ 2022년 10월 31일(7개월)				
위와 같이 가명정보 이용·제공을 신청합니다. 2022년 5월 22일						
			신청인(부서장명)	이 유 통 (서명 또는 인		
1. 개인정보 유형 분류표 2. 활용데이터 요구 수준표(선택) 3. 데이터 처리 위탁 계약서(위탁 계약의 경우) / 추후 제출 4. 데이터 제공 계약서(제3자 제공의 경우) / 추후 제출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확약서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제28조의4)및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시행령 제29조의5)를 성실히 이행하고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를 이행·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관련 법적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2년 5월 22일

신청기관

B통계회사 (직인)

② 보호법에서 정한 목적 중에서 가명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였는지 검토

통계작성 계획서

통계명		2022_COVID19_SalesTrend_410	
대표 참여진	소속	B통계회사	
네표 참여신	담당자명	이통재	
통계작성 배경 및 목적	COVID19는 전세계적으로 펜데믹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각종 산업이 위축되고 개인에 대한 거리두기로 인해 다양한 산업에서 변화를 가지고 왔으며 특히 개인의 소비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개인별 판매 데이터를 분석하여 COVID19로 인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파악 등 다양한 방면에 사용하기 위한 통계를 작성하려 한다.		
통계작성 대상자 수	410만명(2019년 1월~2021년 12월까지 구매내역이 있는 고객 중 50%를 무작위 샘플링)		
통계작성 계획 및 방법	동일 집단의 COVID19발병 이전과 발병이후의 제품의 판매 추이를 통해 COVID19가 개인의 소비 패턴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를 작성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발생할 때 소비의 변화에 따라 지원금의 처리 방법,지원 규모와 생산 산업군에 대한 영향 등을 파악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연구 등에 사용		
붙임. 상세 통계작성	계획서 등		

③ 가명처리 단계에서 데이터의 자체 식별 위험성, 처리 환경의 식별 위험성 등 판단 항목을 누락 없이 검토하였는지 식별 위험성 검토 점검표 및 결과보고서 기반으로 검토

개인정보 유형 분류표

순번	항목명	개인정보유형	비고
1	고객ID	개인식별정보	고객의 개인별 구분값
2	나이	개인식별가능정보	생년월일에서 추출한 정보
3	주소	개인식별가능정보	배송지 주소
4	성별	개인식별가능정보	
5	2019년 1월 여행용품구매액	개인식별가능정보	2019년 1월 여행용품 군의 구매 총액
6	2019년 1월 식품류 구매액	개인식별가능정보	2019년 1월 식품 군의 구매 총액
7	2019년 1월 의류 구매액	개인식별가능정보	2019년 1월 의복 군의 구매 총액
8	2019년 1월 취미용품구매액	개인식별가능정보	2019년 1월 취미용품 군의 구매 총액
9	2019년 1월 생활용품구매액	개인식별가능정보	2019년 1월 생활용품 군의 구매 총액
10	2019년 1월 유아용품구매액	개인식별가능정보	2019년 1월 유아용품 군의 구매 총액
11	2019년 1월 기타 구매액	개인식별가능정보	2019년 1월 6가지 주요 제품군이 아닌 제품의 구매 총액
12	2019년 1월 구매 총금액	개인식별가능정보	2019년 1월 구매 총 금액
13	2019년 1월 선호 제품군	개인식별가능정보	2019년 1월 가장 많이 구매한 제품군
~	~		
217	2021년 12월 생활용품구매액	개인식별가능정보	2021년 12월 생활용품 군의 구매 총액
218	2021년 12월 유아용품구매액	개인식별가능정보	2021년 12월 유아용품 군의 구매 총액
219	2021년 12월 기타 구매액	개인식별가능정보	2021년 12월 6가지 주요 제품군이 아닌 제품의 구매 총액
220	2021년 12월 구매 총금액	개인식별가능정보	2021년 12월 구매 총 금액
221	2021년 12월 선호 제품군	개인식별가능정보	2021년 12월 가장 많이 구매한 제품군
222	2021년 고객 등급	개인식별가능정보	2020년 까지의 구매내역을 통해 산정한 2021년 고객의 등급 P, G, S, B, F

활용데이터 요구 수준표

순번	항목명	요구 수준	비고
1	고객ID	각 고객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구분만 가능하면 됨	
2	나이	중학생 이상 90세 미만까지 분석 예정 단 90세 이상의 경우에도 다른 대조군과의 비교를 위해 90세 이상 표기 요청	
3	주소	시군구 단위의 분석 예정이며 이에 따라 시군구 단위의 주소 필요	
4	성별	분석목적에 남녀의 차이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 필요	
5	2019년 1월 여행용품구매액		
6	2019년 1월 식품류 구매액		
7	2019년 1월 의류 구매액		
8	2019년 1월 취미용품구매액	최소 1만단위 이상의 값에 대해서는 정확한 값이 필요	
9	2019년 1월 생활용품구매액	커포 1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10	2019년 1월 유아용품구매액		
11	2019년 1월 기타 구매액		
12	2019년 1월 구매 총금액		
13	2019년 1월 선호 제품군	제품군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함	
~	~		
217	2021년 12월 생활용품구매액		
218	2021년 12월 유아용품구매액	최소 1만단위 이상의 값에 대해서는 정확한 값이 필요	
219	2021년 12월 기타 구매액	ㅋㅗ 1 한단기 역성의 없에 데에서는 성확인 없이 될요	
220	2021년 12월 구매 총금액		
221	2021년 12월 선호 제품군	제품군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함	
222	2021년 고객 등급	5단계의 고객등급이 구분되어야 함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보고서

	■ B톤게어눼ㄴ ⊐	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상품군별 판매 추이에 대한 통계작성을 위해 당사의			
가명정보 활용목적	구매정보 데이터	구매정보 데이터 중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주요 상품군별 판매액 정보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주요 상품군별 판매액 정보를 나이와 성별, 시군구 단위의 주소별 데이터를 분석			
가명처리 대상 데이터 항목	취미용품, 생활용 월별 선호 제품군	■ 고객ID, 나이, 주소, 성별, 2019년 1월~12월, 2021년 1월~12월까지의 여행용품, 식품류, 의류, 취미용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기타의 7개 범주의 구매금액의 월별 합계액, 월별 구매 총 금액, 월별 선호 제품군, 각 년도의 고객 등급(전체 222개의 컬럼) ■ 전체 고객 820만명 중 50%를 무작위 샘플링하여 구성한 410만명에 대한 데이터			
데이터 위험성	식별성 유무	■ '고객 ID'는 개인식별정보임 ■ '나이', '주소', '성별'은 조합했을 때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개인식별 가능정보임			
-11-1-111-10	특이정보 유무	■ 각 범주별 구매금액의 경우 특이정보로 인한 개인 식별성이 발생할 수 있음			
	재식별시 영향도	■ 단순 고객의 구매데이터로 재식별 시 영향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제3자제공 - 데이터 제공 계약을 체결하여 데이터를 제공 - 데이터 제공 계약에는 재제공 금지, 목적 달성 후 삭제, 재식별 금지 및 재식별 시 조치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음 ■ B통계업체는 개인정보(가명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ISMS-P인증을 취득하고 있음				
처리 환경 검토	처리 장소	 B통계업체에서 가명정보는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는 차단된 별도의 분석 PC에서 분석 예정 분석PC가 있는 환경은 별도의 분석실로 내부적인 출입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	■ B통계업체는 다양한 통계를 생성하는 업체로 유사 업종에 대한 통계정보 등 결합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최종 검토의견*	 해당 연구는 자사의 데이터를 B통계업체에 제공하는 것으로 데이터 자체 위험성과 처리 환경 위험성을 검토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함 통계전문업체의 특성 상 다른 정보의 결합가능성이 있으나 처리 장소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검토할 때 결합에 대한 시도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고객ID'는 개인식별정보로 개인식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따라 다시 원래의 정보로 대체할 수 없는 Salt값이 포함된 해시처리 등의 기법의 적용이 필요 '나이', '주소', '성별'은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조합에 의한 개인식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리가 필요 '나이': 물품의 주 구매대상이 아닌 20세 미만의 경우 삭제처리가 필요하며 그 외의 나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구매 분석 통계에 사용되는 10살 단위로 제공하며 80세 이상의 나이에 대해서는 80세 이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 '주소': 동단위와 상세 주소의 경우 통계목적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며 시군구 단위의 주소까지만 사용하는 것이 필요 '성별': 성별은 분석목적에 필요하므로 그대로 사용 구매액 관련 정보들은 구매금액별 특이정보를 검토하여 구매 금액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상단 코딩을 적용(19년 8월 취미용품 114,562,000원 → 1억원 이상)하고 금액에 대해서 라운딩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 고객등급의 경우 식별성이 높은 VIP, S, A를 하나로 B, C를 하나로 D, E, F를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음 				

^{*}최종 검토의견은 외부전문가에게 자문 및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

④ 가명처리 단계에서 위험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을 적정하게 정의하였는지 확인

항목별 가명처리계획

ΛШ	하므머	게이저나이청		제3자 제공
순번	항목명	개인정보유형	처리 방법	처리 수준
1	고객ID	개인식별정보	대체	- 일련번호 대체
			범주화	- 10살 단위 범주화
2	나이	개인식별가능정보	상하단 코딩	- 20세 미만 삭제 - 80세 이상은 80세 이상 경계치 입력
3	주소	개인식별가능정보	부분삭제	- 동단위 이하 삭제
4	성별	개인식별가능정보	처리 없음	
5	2019년 1월 여행용품구매액	개인식별가능정보		
6	2019년 1월 식품류 구매액	개인식별가능정보		- 상단 99.9%를 초과하는 경우 경계치로 변경
7	2019년 1월 의류 구매액	개인식별가능정보		-금액은 다음과 같이 범주화 적용
8	2019년 1월 취미용품구매액	개인식별가능정보	범주화	-0원:0원 -10만단위 미만:1만단위로 라운드 업
9	2019년 1월 생활용품구매액	개인식별가능정보		- 1,000만 단위 미만 : 10만 단위로 라운딩
10	2019년 1월 유아용품구매액	개인식별가능정보		-1,000만 단위 이상 100만 단위로 라운딩
11	2019년 1월 기타 구매액	개인식별가능정보		
12	2019년 1월 구매 총금액	개인식별가능정보	범주화	- 각 구매액과 동일한 처리
13	2019년 1월 선호 제품군	개인식별가능정보	그대로 사용	
~	~	~	~	
214	2021년 12월 식품류 구매액	개인식별가능정보		-상단 1.5IOR을 넘는 값은 평균값으로
215	2021년 12월 의류 구매액	개인식별가능정보		상단 코딩 -금액은 다음과 같이 범주화 적용
216	2021년 12월 취미용품구매액	개인식별가능정보	H. 조심	-0원:0원
217	2021년 12월 생활용품구매액	개인식별가능정보	범주화	- 10만단위 미만 : 1만단위로 라운드 업 - 1,000만 단위 미만 : 10 만 단위로
218	2021년 12월 유아용품구매액	개인식별가능정보		라운딩 -1,000만 단위 이상 100만 단위로
219	2021년 12월 기타 구매액	개인식별가능정보		라운딩
220	2021년 12월 구매 총금액	개인식별가능정보	범주화	-각 구매액과 동일한 처리
221	2021년 12월 선호 제품군	개인식별가능정보	그대로 사용	
222	2021년 고객 등급	개인식별가능정보	범주화	- 다음과 같이 범주화 처리 -VIP,S,A → 1등급 -B,C → 2등급 -D,E,F → 3등급

⑤ 계획한 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에 따라 실제 가명처리를 수행하였는지 확인

가명정보 처리 기초자료 명세서

	신청 기관 정보				
기관명		B통계전문회	사		
 주소		서울시 은평구 통일			
데이터명	D2468-20210325.txt 평가 목적 통계작성목적의 데이터 제3자 제공				
데이터 수집	2019년 1월부터 12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고객의 구매정보를 수집				
이용 방법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상품군별 판매 추이에 대한 통계작성을 위해 당사의 구매정보 데이터 중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주요 상품군별 판매액 정보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주요 상품군별 판매액 정보를 나이와 성별, 시군구 단위의 주소별 데이터를 분석				
이용기간	2	2022년 2월 1일 ~ 2022	2년3월31일		

		데이터 명세
번호	구분 검토사항	
1	데이터 특징	전체 고객의 구매정보를 7가지 제품군(여행용품, 식품류, 의류, 취미용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기타)으로 분류하여 각 군별 구매금액을 계산한 데이터
2	데이터 생성 방법	전체 고객의 구매정보 820만명 중 50%를 무작위 샘플링하여 410만명을 추출하여 생성 각 제품의 구매금액을 위의 7가지 제품군으로 분류하고 각 제품군의 월별 구매금액의 합계를 계산하여 생성
3	제3자 제공 계약을 통해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 데이터 제공은 1회성으로 제공하며 제공 시 암호화와 관련 HDD에 데이터를 복사하여 제공할 예정, 암호화는 한국인터 암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한 방식으로 암호화 하며 암호 별도의 경로를 통해 제공할 예정임데이터 제공 후 당사의 데이터는 B통계업체의 초기 확인을 경우 바로 절차에 따라 파기할 예정	
4	데이터 관리 환경	제공한 가명정보는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는 차단된 별도의 분석 PC에서 분석 예정 분석 PC가 있는 환경은 별도의 분석실로 내부적인 출입통제를 적용 B통계전문업체는 개인정보(가명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ISMS-P 인증을 취득 B통계전문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조항에서 명시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수행하고 있으며 내부 관리계획에 가명정보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안전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예시 원본 데이터 세부 항목별 명세

컬럼명	명세내용
고객ID	EC-XXXXXX
나이	10살~97살
주소	시(도)군구 도로명 번지
성별	M/F
2019년 1월 여행용품구매액	2019년 1월 여행용품 구매 금액 합계
2019년 1월 식품류 구매액	2019년 1월 식품류 구매 금액 합계
2019년 1월 의류 구매액	2019년 1월 의류 구매 금액 합계
2019년 1월 취미용품구매액	2019년 1월 취미용품 구매 금액 합계
2019년 1월 생활용품구매액	2019년 1월 생활용품 구매 금액 합계
2019년 1월 유아용품구매액	2019년 1월 유아용품 구매 금액 합계
2019년 1월 기타 구매액	2019년 1월 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구매 금액 합계
2019년 1월 구매 총금액	2019년 1월 구매 금액 합계
2019년 1월 선호 제품군	위의 7가지 범주 중 가장 높은 구매 금액 합계액의 제품군
~	~
2021년 12월 식품류 구매액	2021년 12월 식품류 구매금액 합계
2021년 12월 의류 구매액	2021년 12월 의류 구매 금액 합계
2021년 12월 취미용품구매액	2021년 12월 취미용품 구매 금액 합계
2021년 12월 생활용품구매액	2021년 12월 생활용품 구매 금액 합계
2021년 12월 유아용품구매액	2021년 12월 유아용품 구매 금액 합계
2021년 12월 기타 구매액	2021년 12월 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구매 금액 합계
2021년 12월 구매 총금액	2021년 12월 구매 금액 합계
2021년 12월 선호 제품군	위의 7가지 범주 중 가장 높은 구매 금액 합계액의 제품군
2021년 고객 등급	2021년 고객 등급(VIP, S, A, B, C, D, E, F)

예시 원본 데이터

컬럼명	예시
고객ID	EC-232578
나이	36
주소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29길 245
성별	М
2019년 1월 여행용품구매액	0
2019년 1월 식품류 구매액	248,240
2019년 1월 의류 구매액	180,000
2019년 1월 취미용품구매액	740,000
2019년 1월 생활용품구매액	562,500
2019년 1월 유아용품구매액	360,000
2019년 1월 기타 구매액	715,000
2019년 1월 구매 총금액	2,805,740
2019년 1월 선호 제품군	취미용품
~	~
2021년 12월 식품류 구매액	362,150
2021년 12월 의류 구매액	0
2021년 12월 취미용품구매액	24,300
2021년 12월 생활용품구매액	478,130
2021년 12월 유아용품구매액	452,300
2021년 12월 기타 구매액	782,350
2021년 12월 구매 총금액	2,099,230
2021년 12월 선호 제품군	기타
2021년 고객 등급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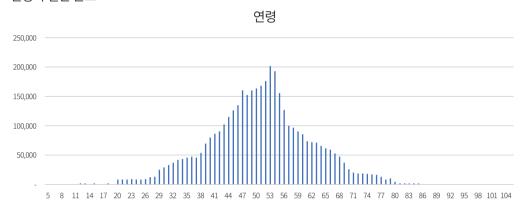
예시 개인정보 속성

컬럼명	예시
고객ID	개인식별정보(ID)
나이	개인식별가능정보(QI)
주소	개인식별가능정보(QI)
성별	개인식별가능정보(QI)
2019년 1월 여행용품구매액	개인식별가능정보(NSA)
2019년 1월 식품류 구매액	개인식별가능정보(NSA)
2019년 1월 의류 구매액	개인식별가능정보(NSA)
2019년 1월 취미용품구매액	개인식별가능정보(NSA)
2019년 1월 생활용품구매액	개인식별가능정보(NSA)
2019년 1월 유아용품구매액	개인식별가능정보(NSA)
2019년 1월 기타 구매액	개인식별가능정보(NSA)
2019년 1월 구매 총금액	개인식별가능정보(NSA)
2019년 1월 선호 제품군	개인식별가능정보(NSA)
~	~
2021년 12월 식품류 구매액	개인식별가능정보(NSA)
2021년 12월 의류 구매액	개인식별가능정보(NSA)
2021년 12월 취미용품구매액	개인식별가능정보(NSA)
2021년 12월 생활용품구매액	개인식별가능정보(NSA)
2021년 12월 유아용품구매액	개인식별가능정보(NSA)
2021년 12월 기타 구매액	개인식별가능정보(NSA)
2021년 12월 구매 총금액	개인식별가능정보(NSA)
2021년 12월 선호 제품군	개인식별가능정보(NSA)
2021년 고객 등급	개인식별가능정보(NSA)

예시 원본데이터 분포

※식별 가능성이 있는 컬럼 위주로 분포표를 작성

- 연령의 일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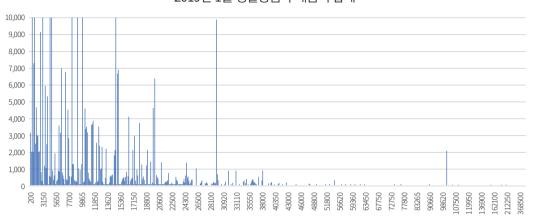


- 연령의 특이정보에 대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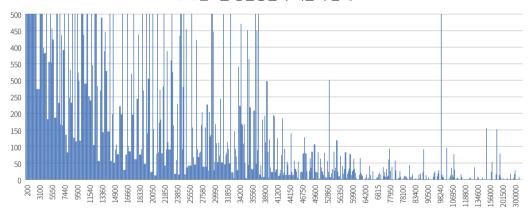
- 2019년 1월 생활용품 구매액의 분포

2019년 1월 생활용품 구매금액 합계



- 2019년 1월 생활용품 구매액의 특이정보에 대한 분포

2019년 1월 생활용품 구매금액 합계



예시 평가 대상 데이터 세부 항목별 명세(집계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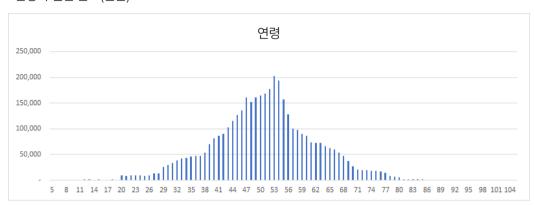
컬럼명	예시
고객ID	1~2,000,000까지의 일련번호
나이	10살단위의 나이 20살 미만 제거, 80세 이상 80세로 상단코딩
주소	시군구 단위의 주소로 부분 삭제
성별	M/F
2019년 1월 여행용품구매액	2019년 1월 여행용품 구매 금액 합계에서 1만단위로 라운딩 적용된 금액
2019년 1월 식품류 구매액	2019년 1월 식품류 구매 금액 합계에서 1만단위로 라운딩 적용된 금액
2019년 1월 의류 구매액	2019년 1월 의류 구매 금액 합계에서 1만단위로 라운딩 적용된 금액
2019년 1월 취미용품구매액	2019년 1월 취미용품 구매 금액 합계에서 1만단위로 라운딩 적용된 금액
2019년 1월 생활용품구매액	2019년 1월 생활용품 구매 금액 합계에서 1만단위로 라운딩 적용된 금액
2019년 1월 유아용품구매액	2019년 1월 유아용품 구매 금액 합계에서 1만단위로 라운딩 적용된 금액
2019년 1월 기타 구매액	2019년 1월 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구매 금액 합계에서 1만단위로 라운딩 적용된 금액
2019년 1월 구매 총금액	위의 7개 값의 합계
2019년 1월 선호 제품군	위의 7가지 범주 중 가장 높은 구매 금액의 제품군
~	~
2021년 12월 식품류 구매액	2021년 12월 식품류 구매금액 합계에서 1만단위로 라운딩 적용된 금액
2021년 12월 의류 구매액	2021년 12월 의류 구매 금액 합계에서 1만단위로 라운딩 적용된 금액
2021년 12월 취미용품구매액	2021년 12월 취미용품 구매 금액 합계에서 1만단위로 라운딩 적용된 금액
2021년 12월 생활용품구매액	2021년 12월 생활용품 구매 금액 합계에서 1만단위로 라운딩 적용된 금액
2021년 12월 유아용품구매액	2021년 12월 유아용품 구매 금액 합계에서 1만단위로 라운딩 적용된 금액
2021년 12월 기타 구매액	2021년 12월 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구매 금액 합계에서 1만단위로 라운딩 적용된 금액
2021년 12월 구매 총금액	위의 7개 값의 합계
2021년 12월 선호 제품군	위의 7가지 범주 중 가장 높은 구매 금액의 제품군
2021년 고객 등급	범주화된 고객 등급 VIP,S,A→1 B,C→2 D,E,F→3

예시 평가대상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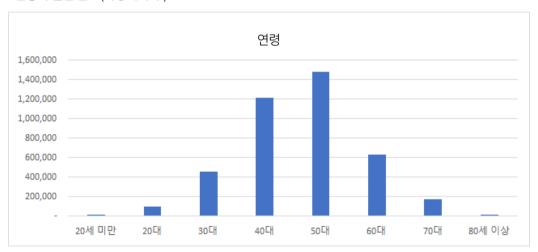
컬럼명	예시
고객ID	2428
나이	30
주소	서울시 은평구
성별	М
2019년 1월 여행용품구매액	0
2019년 1월 식품류 구매액	250,000
2019년 1월 의류 구매액	180,000
2019년 1월 취미용품구매액	740,000
2019년 1월 생활용품구매액	560,000
2019년 1월 유아용품구매액	360,000
2019년 1월 기타 구매액	710,000
2019년 1월 구매 총금액	2,800,000
2019년 1월 선호 제품군	취미용품
~	~
2021년 12월 식품류 구매액	360,000
2021년 12월 의류 구매액	0
2021년 12월 취미용품구매액	30,000
2021년 12월 생활용품구매액	480,000
2021년 12월 유아용품구매액	450,000
2021년 12월 기타 구매액	780,000
2021년 12월 구매 총금액	2,100,000
2021년 12월 선호 제품군	기타
2021년 고객 등급	1

예시 평가대상 데이터 분포

- 연령의 일반 분포(원본)



- 연령의 일반 분포(가명처리 후)



- 연령의 특이정보에 대한 분포(원본)



- 연령의 특이정보에 대한 분포(가명처리 후)



부록 3

자주 묻는 질문(FAQ)

Q 가명정보 자체결합(셀프결합) 개념

A 가명정보의 자체결합(셀프결합)이란 결합전문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와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스스로 결합하여 활용까지 수행하고자 하는 결합 형태를 의미함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와 스스로 결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 민간 결합전문기관은 해당사항이 없음

② 개인정보 가명처리 및 분석 지원의 범위(ex. 모의결합 등)

(A) 결합전문기관의 업무 지원 사항에서의 가명처리 지원은 결합 전 결합대상정보의 가명처리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특히 모의결합이란 결합신청자가 결합에 따른 효용성 및 유용성을 본 결합 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일부 데이터를 미리 결합/분석할 수 있는 절차로 결합전문기관의 업무 지원사항임 결합전문기관의 업무 지원 사항에서의 분석지원은 반출 전 결합정보의 분석과 반출 후 반출정보의 분석이 모두 가능

②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인지 여부

A 가명정보는 성명, 연락처 등 식별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별가능성을 낮춘 개인정보임. 이에 가명정보도 다른 개인정보에 준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나 고유식별번호도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A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고유식별번호와 민감정보는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는 법률, 대통령령 등의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활용 가능함(법률 등에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

- ② 가명정보의 유상 판매가 허용되는지 여부
- A 가명정보를 과학적 연구 등 법에서 허용하는 목적 범위로 제공하면서 대가를 받는 것은 가능하나, 법에서 정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②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가명정보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가명처리 및 결합 등이 가능한지 여부
- A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3장부터 제7장까지 적용하지 않으나(「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개인정보위 결정례에 따라「개인정보 보호법」제58조 제1항 제1호는「통계법」에 따른 승인통계, 지정통계 작성을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한하므로 승인·지정 통계 작성 외 기타 정책 활용 목적 등의 통계작성은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가 적용되어 가명정보 특례 규정에 따라 가명처리 및 결합을 할 수 있음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반법으로 제6조에 의거, 다른 법률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됨

▮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 3.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 ②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제15조, 제22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과학적 연구'가 순수 '과학(Science)'과 관련한 협의의 개념인 것인지, 아니면 인간사회의 여러 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Social Science)' 등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 것인지 여부
- A 보호법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한 '과학적 연구'는 순수과학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등 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임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등과 같은 사회의 여러 현상·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는 연구를 '사회과학'에 관한 연구로 보아 과학적 연구로 볼 수 있음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와 관련하여 사례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해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과학적 방법'에 해당

사회과학은 사회의 여러 현상·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연구를 말하며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이라는 사례를 분석·연구하고자 하는 경우도 사회과학으로 해석

② A부서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B부서에서 익명처리하여 수집 목적 외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A B부서가 A부서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으며, 처리한 정보가 익명정보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는 제58조의2에 따른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경우까지 포함.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러한 정보 생성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 다만 해당 정보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받는 자의 처리목적, 이용 또는 제공환경, 정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② 가명정보에서 추가정보를 삭제할 경우 익명정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A) 추가정보가 삭제된 가명정보가 그 자체만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익명정보인지 여부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판단하여야 함
- 영상 수집 목적 외 영상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영상정보를 마스킹 했을 때 가명정보 및 익명정보 여부
- A 사람이나 자동차 영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에서 그 일부 또는 전체를 마스킹 하였어도 주변 상황 및 환경 등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그 정보가 가명정보인지 익명정보인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가명정보인지 또는 익명정보인지 여부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인지 검토하여 판단 필요

- ② A사에서 다수의 데이터분석회사에 동일한 가명정보를 전송하여 이를 분석한 결과 값을 회신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A A사가 다수의 데이터분석회사에 가명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라면, 개인정보의 업무위탁에 대하여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② 가명정보 결합 신청 중 신청 내용의 변경이 없는 기관의 데이터를 파기 하지 않고 변경된데이터와의 결합에 다시 활용 가능한지 여부
- A 기 접수된 결합신청과 동일한 건이므로 다른 결합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결합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
- ② 결합 신청 시 결합전문기관 선택의 기준이 있는지
- A 결합전문기관의 선택에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선택할 수 있음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 등

② 내부 관리계획 수립 관련 통합 혹은 별개 마련 여부

- A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 관리계획 등을 작성할 때 가명정보에 관한 사항을 기존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과 묶어서 작성할지 별개로 조항을 추가하여 작성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② 개인정보 가명처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가명정보와 추가정보가 같은 서버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 보호법 제28조의4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의5제1항 제2호·제3호가 정하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인지 여부
- A 가명정보와 추가정보를 분리·보관하고 각 접근권한을 분리하도록 한 것은 가명처리 이후 재식별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가명처리 과정에서 가명정보와 추가정보가 일시적으로 동일 서버에 존재하는 것은 보호법 제2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5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2년 4월 발행

발행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원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 본 가이드 내용의 무단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2022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항상 최신의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www.pipc.go.kr) 또는 가명정보 결합종합지원시스템 (link.privacy.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